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제759호 2014. 10. 15.(수)

발행인: 아산시장
편집·보급: 홍보실
전화: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1626)
우)336-701

아산시보

시보게재 요청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시보 게재내용은 전산망을 통하여 반드시 발행일 3일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시보 게재문의 : 전화 540-2811, FAX 540-2162
- 시보 발행일 : 매월 5일, 15일, 25일
- 시보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아산시 홈페이지」 → 「행복시정」 → 「시정소식」 → 「아산시보」 게재



【 계 재 순 서 】

규 칙

○ 제2014-588호(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3
○ 제2014-589호(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	10
○ 제2014-590호(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
○ 제2014-591호(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9
○ 제2014-592호(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37
○ 제2014-593호(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8
○ 제2014-594호(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0
○ 제2014-595호(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41
○ 제2014-596호(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4

훈 령

○ 제2014-405호(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45
○ 제2014-406호(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46

고 시

○ 제2014-256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134
○ 제2014-257호(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35
○ 제2014-258호(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145
○ 제2014-260호(도로명주소(부여) 고시)-----	146
○ 제2014-261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48

공 고

○ 제2014-1409호(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53
○ 제2014-1416호(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5
○ 제2014-1421호(공시송달공고)-----	180
○ 제2014-1428호(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95
○ 제2014-1429호(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
○ 제2014-1431호(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3
○ 제2014-1432호(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2
○ 제2014-1435호(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227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88호

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5.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5.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의 업무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위 등록부를 연2회(상·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으로 인해 공개가 어려운 정책사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② 담당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		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자 현황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89호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당직근무(이하 "당직"이라 한다)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 시 당직사령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 중 숙직근무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종료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숙직근무자 중 근무종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자 및 일직자에게는 당직 실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3일 이상의 연휴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보강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본 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당직사령	1명(6급 이상)	2인 1조
당 직 원	4명	※ 상위직급자를 당직사령으로 한다.
	· 당 직 실 2명	
	· 재난상황 2명	
	· 운 전 원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이 아닌 당직기관에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당직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직원을 별도의 근무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⑤ 당직근무 대상인원 중 임신 중인 자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택당직근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근무일의 경우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해당 당직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결과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난근무자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 시간 중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재택당직으로 전환시에는 자택에서 근무하며, 비상근무 또는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으로 지정된 근무자는 연휴기간이 아닌 날의 숙직근무 시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사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하여 숙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 및 방문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 및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
8.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장비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당직자나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중(소)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업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 소속의 모든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당직사령은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관내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하게 관인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관인을 취급하는 보관책임자를 비상소집하여 당직사령 입회하에 날인해야 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당직근무 관련 법령
9. 당직명령부
10.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당직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읍·면·동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통합메세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당직 업무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업무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 당직기관의 장과 본청 당직주무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2. 작업 현장요원(현업기관)

3.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제22조(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가.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나.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시장의 지시를 받은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

3.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제24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한다.

1. 청사의 주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중(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반의 편성) ①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당직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를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② 본청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소)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 재난관리부서 직원 및 각 실·과 주무팀 직원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③ 상황실 근무반의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④ 회계과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6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27조(문서연락) 비상근무 시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한다.

제28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

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 당직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운영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

실·과명

구분 요일 월일	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비고	점검시간 및 점검자				결재
	최종 퇴청 자	당직 근무 자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시각	성명	시각	성명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숙(일)직

결재	담당	과장

당직 자	당직 명	소속	직명	성명	인	소속	직명	인	문서처리상황					
									종류	발송			접수	인계
문서번호	수신처	제목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 한사 항					조치 결과 확인					특근자 현황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물품 2.문서 3.기타				소속실과	인 원 수		특근시간	
									의 명					
									의 명					
청사내외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연락사항		연락기관			수화자 소속 직명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직 원 비 상 소 집 대 상

※ 1차:자기집 전화번호
2차:이웃집 전화번호

code No.1	성명2	소속3	직위4	주소5	비상연락할곳6			등청시 간 7	동사고내용 8				비고
					1차	2차	파출소		출장	병가	휴가	기타	

-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에(근무상황카드)비치하여야 한다.
- 2. 비상소집 대상은 본인의 1.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 3. 5.6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서무팀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7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소집인원현황

구분 시간 별	계				도 분 청				사 업 소				시 군			
	총원	사고	현재 원	응소 인원	총원	사고	현재 원	응소 인원	총원	사고	현재 원	응소 인원	총원	사고	현재 원	응소 인원

[별지 제5호 서식]

일 일 비상 근무 상황

20 . . . ()

1. 당직사령 2. ○비상근무보좌관 : ○조 원 : 명 3. 산하기관(총 명)				
기 관 별	총 사 령	근무인원	전화번호	비 고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0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순신빙상장·체육관 운영 및 관리

제24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제3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정원표 (제54조제2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분 야(비고)
총 계	40	28		7	5				
일반직 계	40	28		7	5				
4급 소계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5급 소계	4	1		3					
지방의무사무관	3			3					진료(3)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1	1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6급 소계	9	8		1					
지방행정주사	6	5		1					관광개발, 정책홍보 농수산물유통, 업무 기업협력, 안전관리
지방시설주사	2	2							도시계획 도시정책개발
지방전산주사	1	1							전산홍보
7급 소계	15	11		2	2				
지방행정주사보	10	9			1				미디어홍보, 노동상담, 사회적기업, 평생학습, 홍보, 스포츠마케팅, 인터넷방송, 국 문운영, CS전문가 노동조합운영 대중교통운영
지방시설주사보	1	1							공공디자인
지방녹지주사보	1				1				박물관학예사
지방농업주사보	1	1							친환경급식
지방보건진료주사보	2			2					보건진료원
8급 소계	6	5			1				
지방행정서기	2	2							공연기획연출, 통계
지방녹지서기	3	2			1				공원녹지(2) 수목원관리
지방전산서기	1	1							전산홍보
9급 소계	5	3			2				
지방행정서기보	4	2			2				평생 학습(2), 민속마을관리, 빙상장 운영
지방공업서기보	1	1							비서업무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1호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아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공통사항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 ^ 5 급소장 V 장	국 ^ 4 급소장 V 장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장				
1	아산시 조례·규칙·훈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가. 조례·규칙·훈령 제·개정 및 폐지 방침 결정, 공포		기안				○
	나. 조례·규칙·훈령 제·개정안 입안 및 입법예고	기안				○	
	다.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기안		○			
2	송무(소송, 행정심판)관련 사무						
	가. 제소, 피소, 상소,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기안				○
	- 소가 5천만원 이하의 민사의 제소, 피소, 상소, 판결결과 보고					○	
	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검토						
	- 시장,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다. 소송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기안		○		
3	시정·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4	시정·시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 그 밖에 세부계획의 범위안에서 파생되는 집행 업무 (기존방침에 의한 사무처리)	기안		○			
5	보고업무						
	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및 보고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시장의 하명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기안				○
	다. 각종 정례보고 및 각종자료 제출	기안		○			
6	각종 회의 개최						
	가. 국장 및 직속기관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회의 개최계획 및 회의결과 보고		기안			○	
	나. 6급 이하 직원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7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번 호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 ^ 5 급 소 장 V 장	국 ^ 4 급 소 장 V 장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 장				
	가. 기념행사 및 유관기관장 회의, 지역주요인사 간담회 등 주요행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기념행사 및 유관기관장 회의, 지역주요인사 간담회 등 주요행사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다. 기념행사 및 유관기관장 회의, 지역주요인사 간담회 등 주요행사 준비 및 시행	기안		○			
8	사무인계인수 사항						
	가. 부시장			기안			○
	나. 국장, 사업소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평생학습문화센터)			기안		○	
	다. 부시장 직속기관 (홍보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안		○	
	라. 그 밖의 실·과장			기안	○		
	마. 6급 이하 직원	기안		○			
9	관외출장(복명에 관한 사항 포함), 연·휴가, 병가 등						
	가. 국장, 4급 사업소장				기안		○
	나. 직속 실과장			기안		○	
	다. 본청 실·과장			기안	○		
	라. 5급 사업소장, 읍면동장			기안		○	
	라. 6급 이하 직원	기안		○			
10	관내출장(복명에 관한 사항 포함), 외출, 조퇴						
	가. 국장, 4급 사업소장, 직속 실과장				기안	○	
	나. 직속 실과장			기안		○	
	나. 실·과장			기안	○		
	다. 5급 사업소장, 직속기관, 읍면동장	기안		○			
	라. 6급 이하 직원	기안		○			
11	공무국외연수(여행)에 관한 사항						
	가.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해당실과)						
	- 자체 수요에 의한 국외여행계획 수립	기안				○	

번 호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 ^ 5 급 소 장 V 장	국 ^ 4 급 소 장 V 장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 장				
	- 타 기관 계획에 의한 연수참여계획 (중앙, 도, 교육원, 민간단체 등)	기 안				○	
	나.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해당실과)	기 안		○			
	다.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자치행정과)	기 안				○	
	라. 공무국외여행 통보(자치행정과)	기 안		○			
12	소속직원 관리						
	가. 시간외 근무명령 및 내역 통보	기 안			○		
	- 본청(단, 직속실과의 경우 부시장)	기 안			○		
	- 직속기관, 4급 사업소	기 안			○		
	- 5급 사업소 및 읍·면·동	기 안		○			
	나. 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기 안		○			
13	각종 위원회·협의회(체)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협의회(체) 구성, 운영 (위원의 위·해촉 및 결과보고 포함)						
	- 위원장이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		기 안				○
	- 그 밖의 경우	기 안				○	
	나. 안건 부의						
	- 위원장이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		기 안				○
	- 그 밖의 경우	기 안				○	
	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와의 업무협조	기 안		○			
14	각 실·과별 총무계획 수립	기 안				○	
15	보안진단 점검 등 보안과 관련된 사항	기 안		○			
16	무기계약직·1년이상기간제근로자 인력 관리						
	가. 정수승인요청 및 승인	기 안		○			
	나. 상근·비상근 정수조정(총무과)	기 안				○	
	다. 채용승인 신청(실·과·사업소, 읍면동)	기 안		○			
	라. 상근·비상근 채용승인(총무과)	기 안			○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 ^ 5 급소장 장 V	국 ^ 4 급소장 장 V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 장				
	마. 근무지 조정(총무과)	기 안		○			
17	민원						
	가. 민원서류의 처리명령 및 처리부 정리	기 안		○			
	나. 민원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기 안		○			
	다. 경미한 진정 및 건의서 처리						
	- 시장, 부시장 직속 실·과	기 안				○	
	- 그 밖의 실·과	기 안			○		
	라. 공부에 의한 제증명의 발급 및 열람허가	○					
	마. 다수인관련 민원 선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관련 민원)						
	- 20인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관련 민원 선람		기 안			○	
	- 5인 이상 2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관련 민원 선람		기 안		○		
18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기 안			○		
19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서 제출	기 안		○			
20	예산집행 품의						
	가. 공사 및 토지매입						
	- 4억원 이하	기 안				○	
	- 2억원 이하(직속실과는 담당관 전결)	기 안			○		
	- 3천만원 이하	기 안		○			
	나. 제조·용역						
	- 2억원 이하	기 안				○	
	- 1억원 이하(직속실과는 담당관 전결)	기 안			○		
	- 3천만원 이하	기 안		○			
	다. 기타(1건당)						
	- 1억원 이하	기 안				○	
	- 5천만원 이하(직속실과는 담당관 전결)	기 안			○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 ^ 5 급소장 장 V	국 ^ 4 급소장 장 V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장				
	- 3천만원 이하	기안		○			
	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는 국장)	기안		○			
	마.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기안		○			
21	공사감독관 임명	기안		○			
22	공사착공 및 준공계 처리	기안		○			
23	설계변경						
	가. 공법변경, 노선변경 등 중요공정 설계변경						
	-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나. 민원사항처리, 구조물형식변경, 위치수정 등 경미한 변경	기안		○			
24	공사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가. 1억원 이하	기안		○			
	나. 1억원 초과						
	-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25	공사 하자검사	기안		○			
26	공사감독관 조서	기안		○			
27	물품검수	기안		○			
28	용지 및 지장물 보상						
	가. 보상가격이 3천만원이하	기안		○			
	나. 보상가격이 2억원이하						
	-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다. 보상가격이 4억원이하	기안				○	
	라. 보상가격이 4억원초과	기안					○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 ^ 5 급소장 장 V	국 ^ 4 급소장 장 V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 장				
29	부실공사 방지대책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나.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위촉	기안		○			
	다. 주민설명회 개최						
	-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라. 부실시공업체 제재						
	-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 그 밖의 실·과	기안			○		
30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 기본계획 및 방침결정		기안				○
	-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금액 확정		기안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직속실과)		기안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결정 통보 (그 밖의 실과)		기안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직속실과)	기안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그 밖의 실과)	기안			○		
	- 보조금 정산(직속실과)	기안		○			
	- 보조금 정산(그 밖의 실과)	기안			○		
31	소관 사회단체별 지도·감독·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가. 부시장 직속 실·과	기안				○	
	나. 그 밖의 실·과	기안			○		
32	당부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 ^ 5 급소장 장 V	국 ^ 4 급소장 장 V	부 시 장	시 장
		주무관	팀 장				
	가. 당부사항 추진계획 수립(검토보고 등)		기 안				○
	나. 중요 진도 보고 및 최종결산 보고	기 안					○
	다.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세부 업무	기 안		○			
33	시장 공약사항 추진 상황	기 안					○
34	시정질문 답변서 작성 제출						
	가. 일반적인 답변사항	기 안			○		
	나. 주요 의사결정 사항	기 안					○
35	예산 변경사용 결정	기 안			○		
36	각종 공모사업						
	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등 각종 공모사업(1억원 이상)	기 안					○
	나.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등 각종 공모사업(1억원 미만)					○	
37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기 안				○
38	기타						
	가. 법령 등에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기 안		○			
	나. 지정 방침에 의한 사무처리	기 안		○			
	다.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	기 안		○			
	라. 본청업무의 읍면동 역할 분담 및 협조						
	- 읍면동에 대한 독자적 업무(고유업무) 부여	기 안					○
	- 읍면동 역할 분담	기 안				○	
	- 읍면동에 대한 협조적 업무 분담	기 안			○		
	마. 그 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						
	- 규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 지역과 기관, 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정책결정을 위해 외부 기관과 협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	기 안					○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2호

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3호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및 소매인 수
(제2조제2항 관련)**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매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 1) 냉장고, 계산대(뒷 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 편의시설 등은 제외한다.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4호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5호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차등록원부,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산정을 위한 자료는 취업 및 인사 관계서류, 월별 근무일수가 기재된 배차일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확실한 근거를 갖고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직원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제1항제7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을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아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제5조 관련)

구 분	순위	내 용	비율
택 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에 등록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아산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9년 이상 근속 중인 자 	8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시 내 버 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아산시 소재 시내버스회사에서 9년 이상 근속 중인 자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기 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아산시 소재 운송사업체에서 8년 이상 근속 중인 자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법인 사업체)에 운전직으로 고용되어 20년 이상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관 용 군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 군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우선순위 및 가산경력 항목 적용기준》

- ※ 면허대수는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고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고 잔여 대수는 택시업종에 배정한다.
- ※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아산시장이 면허(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포함한다.)한 운송사업체에서 아산시가 사용본거지인 차량을 2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와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아산시가 사용본거지인 차량 운전자여야 한다.
- ※ 최종 종사업종 외 다른 운전경력이 있을시 타 경력은 1/2로 계산하고 자가용자동차 및 관공용자동차 운전경력은 1/4로 계산하여 가산한다. 단 우선순위에서 정한 운전경력이 충족 되었을 경우에 가산한다.
- ※ 우선순위 가산경력 항목의 나, 다, 라의 사항의 적용은 운전경력 개시일 이후부터 면허신청 공고일이내 이어야한다. 다만, 훈포장에 대하여는 기간경과 규정 없이 인정한다.
- ※ 가산경력 항목은 우선순위에서 정한 운전경력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가산경력 항목이 가, 나, 다, 라, 마, 바 항에서 2개항 이상 해당되는 때에는 비율이 큰 2개항까지만 합산하고 나, 라 항내에서는 비율이 큰 1건만 1회 적용한다.

□ 가산경력 항목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1명(1년)
- 나. 선행자
 - ①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자(3개월)
 - ② 국무총리, 장관, 충청남도지사, 아산시장의 표창을 받은 자(2개월)
 - ③ 경찰청장, 아산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1개월)
- 다. 모범운전자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속활동 중인 운전자
 - ① 공고일 기준 모범운전자 활동기간이 3년을 초과한 때(3개월)
 - ② 공고일 기준 모범운전자 활동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3년까지(2개월)
 - ③ 공고일 기준 모범운전자 활동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부터 2년까지(1개월)
- 라. 택시운전자등 운전자로서 중요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자, 다만, 중요범인의 범위는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조직폭력·소매치기·약취유인·마약사범·뺑소니 범에 한한다.(1개월)
- 마. 여성운전자(1개월)
- 바. 지체장애인[3등급이상] 운전자(1개월)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규칙 제596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훈령 제405호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라목 중 “5억원 미만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5억원 미만 공사의 설계 변경 또는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정심사의 자문) ① 시장은 재정심사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위촉된 재능기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아산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 이하의 검토비, 실비 범위 내에서의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훈령 제406호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아산시 사무분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명	팀명	구분	사무분장
홍보실	홍보		홍보기획과 관리 및 뉴미디어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기획		주요시책 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발전계획 수립·시행	
		주요시정 반복적 홍보계획 수립·추진	
		시정신문 발행·배부 및 전자북 관리	
		시정신문 명예기자 관리	
		시정 홍보책자 발간	
		도정신문 관리	
		공고 및 고시번호 부여	
		시청 게시판 관리	
		시보제작	
홍보관리		실과사업소 홍보담당자협의회 운영 및 교육	
		홍보전문가 육성프로그램 추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시정홍보용 옥외광고물(홍보판, 홍보탑 등) 설치 관리	
온라인 홍보		인터넷·미디어·IT를 활용한 홍보기획 총괄	
		아산시 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아산시 뉴스사이트 운영	
		아산시 웹진(뉴스레터) 개발 운영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안시스템 운영	
		소셜미디어(SNS) 운영(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아산시 블로그 운영	
영상홍보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 관리	
		미디어보드(시정홍보IPTV) 운영, 관리	
		시정홍보 영상물 및 디자인 제작	

	첨단 콘텐츠 홍보	e-sports 대회 추진(충무공해상대전 등)
		RGC 전국 로봇페스티벌 추진
		시정홍보 문화콘텐츠 제작 및 운영
	장비관리	웹서버, 보조웹서버, 인터넷방송국 서버관리
공보		공보·광고와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공보·광고	공보업무 종합 기획·조정
		신문 및 행정예고
	언론보도	언론·방송 보도자료 작성·배부·분석·대응
		언론·방송 매체 및 언론인 취재 지원(뉴스)
		언론홍보 대상자 DB관리
		시정브리핑 운영
	기록물 관리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비디오·사진 등 시정기록물 관리
		시정기록물 DB구축
미디어		지상파 및 케이블 TV 등 방송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방송홍보기획	지상파 방송 홍보 기획
		케이블 방송 및 IP TV 홍보 기획
		인터넷 방송 총괄
		방송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발굴 기획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발굴 기획
	방송홍보	케이블 방송 보도 기획 방송 취재 지원
		지상파, 케이블 등 방송협력을 통한 시정홍보
		주요시책 방송콘텐츠 기획 및 드라마, 영화, PPL 기획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한 시정관련사업 방송제작 지원 및 홍보방법 기획
		방송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취재지원	인터넷방송 기획, 취재, 제작 등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지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촬영 지원
			방송 송출 영상 업로드
기획예산 담당관	기획		시정 종합기획·조정과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시정 종합기획·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행·조정
			시정 비전·캐치프레이즈 발굴·홍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신규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개선·중단·축소·조정
			광역권 행정협의회 의제관리
			자치단체 연계 행정협의 및 협력사업 발굴
		지시사항	시장·부시장 당부사항 종합관리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시장·부시장 부재중 처리사항 관리
		업무보고	주요업무시행계획 관리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운영
			월요정책토론회 운영
			주요업무보고 종합 관리
		행정자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정책실명제 운영
			시정백서 발간
			열린정보센터 운영
			의회지원과 자치법규 및 소송·심판에 관한 사항

의회법무	의회협력	아산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
		시의회 기능강화 업무 발굴
		시의회 상시 협의 시스템 운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점검
	자치법규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폐지심사·공포
		법령질의 및 해석·검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행정법규·절차 연찬 및 상담실 운영
	소송·심판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수행 조정 통제·지도
		사건별 대응 TF팀 운영
		청문절차 제도 운영
예산		예산운영과 참여예산제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예산편성·집행 감독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
		예산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승인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 관리
		성립 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성인지 예산, 성과예산 추진
		보조금사업 성과관리제 운영
		지방재정 조기집행 종합관리
		광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예산확보	국도비사업 발굴 및 보고회 운영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점검
		BTL사업 예산확보 및 운영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재정운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예산개요.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시스템 관리 각종 기금 운용 관리 재정운영 상황 공시
정책담당관	정책		공약관리·정책개발 및 부서간협력과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공약관리	시장 공약사항 점검 및 관리
		지역발전 및 부서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서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
		전문가 협력	시민참여 정책기획자문단 운영
			21세기 아산비전 컨퍼런스 운영
			전문가 POOL 관리 지원 및 자문단(MP) 운영
		정책개발	정책개선 과제 및 신규정책 개발
			제안제도 운영 및 포상
		정책홍보	각종 시책사업 정책홍보
	미래비전		비전마련 및 정책지원 총괄
		비전마련 및 정책지원	자족도시 아산 비전마련 및 정책지원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 및 선도사업 추진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계획수립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지원
			주민 정책만족도 리서치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융복합 업무, 현안사항 총괄 기획
		전략사업유치	중앙부처 및 충남도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성과평가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정책 성과지표 관리			
각종 대내·외 기관평가			

평가통계		정부합동평가(시·군 통합평가)
	통계관리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 개발
		각종 통계조사·심사·분석·공포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연보 등 통계관련 간행물 발간
		기본 통계자료 관리
감사담당관		열린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열린감사	감사기획	클린 아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운영
		감사제도 개선
		자체감사, 사전예방감사, 정책감사 강화
	참여감사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 시스템 운영
		시민감사관제 설치 운영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자체감사	심사평가 위주 감사체계 구축
		주요업무 추진실태 상시점검
		취약업무 테마감사 및 상시 감찰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점검
	상급기관 감사	상급기관 감사 종합 관리
		공무원 징계요구·소청
		타 기관 감사 대행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및 퇴직자 취업제한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개별,통합)상시모니터링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기술감사		기술분야 감사와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사항
	기술감사	기술분야 감사 총괄
		기술분야 특별감사·부분감사
		기술분야 자체감사 징계·소청
		기술분야 상급기관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기술분야 타 기관 감사대행
	부실공사 방 예	건설공사 부실방지 계획 수립·추진
		소규모·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상황 점검
		건설공사 준공검사시 입회
		주민감독관제 운영실태 점검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일상감사 추진
조사		조사·감찰과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조사·감찰	자체 진정 및 상급기관 이첩 민원 조사
		조사 관련 징계 및 소청
		다수인 관련 민원 조사
		언론 보도사항 조사
		민원처리실태 점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시민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비위조사	공무원 비위 조사
		공직기강 확립
		시장 특명사항 조사
		재정심사 및 설계심사와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재정심사기본계획 수립·운영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재정심사	

	재정설계 심사	재정심사	공사 설계변경 심사
			재정심사시스템 강화
			예산의 건전운용과 예산절감 시책개발
		설계심사	공사·용역 발주 심사
			토목,건축,조경,설비 등 용역 준공전 설계심사
			설계심사 관련 규정 운영
			대형공사 입찰방식 의견 제시
		신기술 보급	기술용역의 타당성 심사 및 발주 심의·자문
			건설기술 증진 및 신기술 개발·보급·활용
			건설기술자료 DB구축·운영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지침 운영
	생활민원 TF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민원 신속처리지원	홈페이지, 당직실, 콜센터, 서울행정 민원관리
			생활불편민원 현장 확인 및 이행 실태 점검
복합생활민원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			
생활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안전총괄 담당관	안전총괄 및 사회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정책 및 사회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재난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조체계 구축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총괄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작성·관리	
		사회재난예방사업 추진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총괄	꽃 피워세고 안전관리	재난동원자원 관리
		재난문자전광판 운영관리
		사회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사회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안전정책 수립 추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자료 관리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수립 시행
		총무계획
	수상안전	수상안전 활동 지원
		유도선사업 면허 및 신고 사업장 안전관리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운영
		안전도시 정책사업 추진
		안전도시네트워크 구성 운영
		안전도시 공인(WHO) 대회협력 및 세미나 관리
		생활안전지도 구축
	기동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지정·점검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지도
		공연행사장 재해대처계획 심의 및 안전대책 추진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시기별,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안전점검의 날 행사계획 수립·시행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재난취약가구 및 영세가구 안전점검·정비
	재난취약시설 기동점검반 구성·운영
	재난위험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NDMS) 자료관리
	안전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예방복구	자연재난예방대책과 복구에 관한 사항
	안전재난분야 교육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지역안전도 진단 및 재난관리실태 공사
	급경사지 관리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관리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NDMS) 총괄 운영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풍수해 보험 가입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풍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기대응메뉴얼 작성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지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우수 유출저감시설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홍수대책 운영
		지진재해대책법 및 지진대응시스템 관리
	재해 응급복구	재해 응급복구 시행 및 재난지원금 집행
		재해피해 합동조사단 운영 및 재해대장 관리
		수방자재확보 관리
재해 발생신고 처리 및 임시 기동 처리반 운영		
민방위		민방위 정책과 시설관리 및 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 정책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민방위대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민방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민방위 편성 및 조직관리
		민방위 정시동원 및 비상소집
		화생방업무, 민방공 대피훈련
		비상대비 중점자원 관리
		대테러업무 추진
		직장민방위대 편성, 훈련 운영 관리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 소방대 업무 지원
		소방 공공청사 유지 관리
		의용 소방장비 지원 및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및 복무관리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관리 포털시스템 자료관리		
비상대책	을지연습계획 수립 및 추진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행·검 협력관리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해제업무 관리
		특별사법경찰 송치업무 관리

	민생사법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활동 역량(교육)관리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영장신청 관리	
			서민생활 위해행위 위반자 구속관리	
			민생 6개분야 서민 위해행위 단속	
			민생 6개분야 범죄예방·홍보	
			민생 6개분야 수사·조사·송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통업소 단속	
			친환경 급식재료 유통업소 단속 및 검증관리 단속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사	
			식육판매, 음식점소, 학교 등 식육 시료채취 및 검사	
			농산물원산지 미표시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청소년 예방보 호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단속	
		규제개혁 추진단		행정규제 개혁 종합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제발굴 및 개혁	규제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행정규제 등록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 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				
인·허가 부서 운영 지원				
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규제신고 고객보호	지방규제 신고고객보호운영조례(현장) 제정 운영			
실적관리	지자체 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총무과		서무 및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각종 회의통제 및 상황실·중회의실 사용 조정		
		청내·외 문서 접수·분류·배부		
		공인관리		

서무	서무일반	연말연시 종무식·시무식
		직원비상소집 훈련
		본청 직원 연·휴가 통제
		본청, 읍면동 복무관리
		직장예비군 편성 운영 관리
		보안업무
		도청 및 읍·면·동·사업소 문서사송
		일·숙직 및 무인전자경비용역 관리
		태극기·아산시기 관리
		행정수첩 제작·배부
의전	이·취임식 등 각종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군부대 지원 업무	
	화랑·충무·독수리 훈련	
	병력이동훈련 등 지역방위 훈련지원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관·보존문서·문서고 관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관련 업무	
	아산시기록관 관련 업무	
노사관리	노사(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 지원 관리	
	노사(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 단체 협상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인사운영	공무원 인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정·현원 관리 및 인사통계	
	공무원 관계증명 및 공무원증 발급	

인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통제 및 청원경찰 채용·퇴직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승인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능력 위주 인사시스템 구축
		순환보직 및 인사교류 활성화
	조직운영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기구 조정
		부서간 칸막이문화 및 부서 이기주의 개선
		간부공무원 실무 참여 관리
		행정업무 민간위탁 총괄
		사무분장 및 사무전결 관리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공무원 급여	공무원 호봉책정 및 조정
		임기제 및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정기평가 및 연봉 책정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집행
		공무원 퇴직금·연금
		공무원, 근로자 4대보험
	포상	공무원 표창
능력개발		공무원 역량강화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공무원 장학생 선발 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공무원 자체직무교육 및 위탁교육
		공무원 학습동아리 지원
	후생복지	공무원 선택적 후생복지 제도 개발·운영
		구내식당, 매점, 공무원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 육성 지원
		직장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계약 및 보상관리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공무국외 여행	공무국외여행 심의
			공무원 해외연수 기획 및 지원
	직소민원		시장 공약·당부사항 전달 및 일정·수행에 관한 사항
		당부사항	시장 공약·당부사항 전달
			시장 주요시책 당부사항 전달 및 확인
		일정·의전	시장 일정관리·의전·수행
		직소민원	직소민원 접수·관리
			직소민원 사항 부서별 업무조정 및 협의
			직소민원 유형별 분석 및 정책개선과제 발굴
	시설관리 공단TF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자치행정과		일반행정과 시책에 관한 사항
		읍면동 행정지도	
		시장 특명사항 추진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관리	
		시민과의 대화 운영	
		읍면동 연두방문 및 도지사 방문 업무	
		각종 시책 업무	
		명예 시장(시민) 운영	
		읍면동 종합평가 운영	
		기관장협의회 운영	
		시장·군수 회의 총괄	
		지휘보고	
		갈등관리 및 상생협력 포럼 지원	

행정	일반행정	선거 관리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거사(일제강점 및 6·25 남북피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행정구역 조정
		시민배심원제 운영
		대학생 행정참여제 운영
		행정사 업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적십자회비 모금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원
		이·통장협의회 등 업무 지원
		총무회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 지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친절(CS)
범시민 친절아산만들기 추진		
인권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업무 총괄	
시민포상	유공시민 표창 및 시민대상	
대외협력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
		국제 자매결연 도시 정책교류 추진
		중앙부처 및 도, 유관기관 협력 추진
		향우회 관리 및 행사지원
		개발도상국 농업기술 연수사업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관리		

	모니터 관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및 도정·시정 모니터 관리
새마을		새마을운동과 소규모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새마을 운동	새마을사업 종합 추진
		새마을, 도덕성회복, 바르게살기 단체 지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도의사회 교육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관리
		새마을 소득 용자금 지원
		새마을 주민소득사업 지원
		새마을금고·문고의 운영 및 육성
	소규모 지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50m미만 비 법정도로 교량관리(농업 몽리구역 등 법정지역 제외)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행
참여자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활성화	각종 주민참여제도 기획·조정 및 종합관리
		주민 상시참여 활성화
		주민주도 참여시스템 구축·운영·점검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주민참여포인트제 종합 조정·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참여유형 분석 및 부여대상 발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주민자치위원 교육 추진

		주민자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아산시주민자치연합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지원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자원봉사자 운용 지원	
세무과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부과	세금부과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직권부과 자동차 관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직권부과 자동차세(서유분)·자동차세(주행분) 부과·조정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직권부과 지방세 전산실 운영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비과세 감면확인서 발급·사후관리 담배소비세 부과·조정 지방세 세수추계 및 징수전망 분석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재산세 부과	재산세 부과계획 수립·시행 토지분·주택분·건축물 재산세 부과·조정 토지·건축물 이동상황 처리 과세자료 현황 확인 미공시 대상 주택 조사·관리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및 정비 재산세 중과대상 물건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자료정비

재산세		지역자원개발세(특정부동산) 부과·조정	
		종합부동산세 자료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	
		재산조회	
	과세표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부동산·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세표준액 조사·결정고시
			건축물·기타물건 등 시가표준액 결정
			공동주택가격 공시 지원
			일반건축물 개별 가격 조사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
	징수		세금 징수와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
		세금징수	
			도·시세 징수 포상금 지급
			징수유예 및 징수촉탁
			자동이체·카드수납 등 납세 편의시책 추진
			납세안내 문자발송서비스
			가산금 및 증가산금 조정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관리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독려 종합대책 수립·시행	
		체납자 자동차 압류 및 공매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계획 수립 및 영치		

	체납세 징수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제 및 공매
		체납자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및 해제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법원최고서 및 경매 배당금 수령
세입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세입관리	일반회계(지방세·세외수입)·지방세부가국세 수납 및 징수부 관리
		보조금·양여금·교부세 세입 처리
		채권 결산자료 취합 및 유휴자금 운용
		자금배정 승인
		시금고 지정·운영
		지방세 부가국세 월별 징수보고 및 결산자료 제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및 특별회계결산 자료 취합
		도세 월별 징수보고 및 결산자료 제출
		세입금 수납대행정 점검·관리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세외수입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수수료 현실화 방안 추진		
기부금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심사	
		세무조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계획 수립·시행
		중과세 대상 조사·부과

	세무조사	세무조사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
			주민세 신고납부·부과
			과세 적부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세
	기동징수	결손 및 고액 체납 관리	결손액 사후관리 및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결손 및 고액·고질체납액 징수 관한 계획 수립·시행
			결손액 사후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
			과년도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체납자 은의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조사
			유체동산 압수수색 및 압류·처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관한 사항
			세수추계 및 징수전망 분석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구제업무 처리 및 소송수행
			법인세분 부과·징수
			특별징수분 부과·징수
			양도소득분 부과·징수
			종합소득세분 부과·징수
			국세청 통보분 자료구축 및 대사
	회계과	경리	경리·회계 및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국·도비 및 시비 지출에 관한 사항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원에 대한 출납검사			
본청, 읍·면·동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계산 지출 및 연말정산			
회계별 결산 업무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원천징수 납입			
특별회계 유휴자금 운영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결산추진 및 자산부채 실사관리
청렴계약		청렴계약과 검사조사에 관한 사항
	계약 업무	공사·용역·물품구매 청렴계약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 대행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방안 연구
		관급자재 계약·수급·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물품의 취득 및 출납관리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통보
		관용차량 관리
	검사·조사	적격심사, 하자검사
정기재물조사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와 개발용지 발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운영
		공유재산 취득·처분·대부·계약
		공유재산 관련 소송
		공유재산 기부채납
		공유재산 평가 및 실태조사
		등기증서 및 공유재산 관계증빙서 보존
		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업무
	개발용지 발굴	공유지 개발 가용지 조사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창구민원 및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주민등록, 인감업무

민원행정	민원행정	민원24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새올 참여마당 민원관리	
		민원서류 통합접수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열람	
		‘어디서나 민원’ 접수·처리	
		행정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접수 및 분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발급	
		거주외국인 현황조사	
		거주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및 관리	
		복합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가족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관리	
		제적부 관리	
		가족관계 등록신고 접수 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직권정정	
		인구동태사항 관리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조회 및 회보	
수형인 명표관리 및 법원선고문(한정재산, 금치산, 파산) 관리			
		차량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차량,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	

차량등록	차량관계 등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 말소, 변경 등) 및 범칙금(이전등록) 징수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
		건설기계신규, 이전, 변경, 말소, 압류, 저당등록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및 제증명 발급
		자동차압류 등록 및 해제
		자동차 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 등록
		자동차등록 제증명 발급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임시운행허가 및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멸실말소
		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
정보통신과		지역정보 및 정보화마을과 신도시 U-city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	지역정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U-아산 정보화추진 및 환경개선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추진
		성웅 이순신 사이버 테마정보관 운영
		CIO(정보화책임관) 운영 및 제도 개선
		콘텐츠 보강 및 서버 업그레이드 추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정보화 마을	정보화마을 구축 지원 및 아이템 개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 지원
		U-농촌체험 관광사이트 운영
		주민정보화 능력개발 시책 개발·추진
		인터넷 경진대회 추진
전산교육장 운영 관리		

	정보화 교육	읍면동 디지털방 운영 관리
		장애인 정보화지원
		공무원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U-시티	아산시 유시티 추진 및 유시티 운영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 및 정보보안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
	행정 정보 및 시스템	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행정포털시스템 운영
		행정 알리미(SMS)서비스 운영
		행정전산자료 소산 및 안전관리
		통합백업시스템 운영
		전산관리업무 기획·조정
		그룹웨어(전자결재) 도입·운영 및 활성화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 시스템 관리
		업무별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지원
		전산개발업무코드 표준화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서울행정시스템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문서유통 송수신 중계문서 관리
		바이러스 예방 및 보안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패치관리시스템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관리
		개인정보보호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발급
		IP관리시스템 운영
	정보 통신망	종합행정정보망(LAN)·지방행정정보망(WAN) 운영
		통합정보관리시스템(지킴-e) 운영
		인터넷망 운영
정보통신망 설계·신증설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		
정보통신		통신 기획과 통신장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통신기획	정보통신 기획·설계
		정보통신 보안 업무
		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통신회선 유지 관리
		U-IT 신기술 도입검토 및 추진
		행정영상방송망 운영·유지관리
		청내 방송
		모사전송 문서 수발
	통신장비·시설	인터넷전화 시스템(IPT) 구축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시설 설계·용역·시공감독, 준공검사
		행정전화번호 자원관리 및 배분
		공공요금관리 및 팩스서버 운영
		보안장비 관리
		유·무선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영상회의 및 종합방송센터 운영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관리		
통신비용 절감을 위한 자가 통신망 구축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민원콜센터		민원콜센터 운영과 분야별 상담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콜센터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업무 총괄		
		콜센터 서비스 KS인증 획득 및 유지		
		콜센터 시스템 운영 및 시설구축		
		콜센터 상담 DB 구축		
		콜센터 연간운영계획 수립		
		콜센터 민원 통계		
		콜센터 분야별 상담 매뉴얼 작성 운영		
		콜센터 상담원업무 교육		
		콜센터 위탁운영자 관리		
		콜센터 홍보		
		공공시설과		시청사 및 공공건축물 운영에 관한 사항 (아산시청사, 장영실과학관, 시민문화복지센터, 온양온천 방문객센터, 장항선 철도 하부공간 시설물에 한함)
청사관리	공공청사 관리	시청사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과학관제외)		
		시청사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관리		
		시청사 사무실 배정 및 사용수익허가		
		시청사 주차장 관리		
		시민홀 대관 및 운영 관리		
		시청사 및 관리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추진		
	철도하부공간 및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주차장 관리 제외)		
		철도 하부공간 활용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시설물 관리		
		온양온천역 광장 시설물(타 실과 관리시설 제외) 관리		
		각종 문화예술공간 조명·음향 기술 및 운영 지원		
		관리시설 임대차 및 사용 수익 허가		
	장영실과학관	장영실과학관 운영 관리		

	운영	장영실과학관 민간사업시행자 관리 및 성과평가
공공시설1		청사 및 공공건축물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안전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읍·면·동, 사업소에 한함)
	친환경 공공시설 정책	녹색청사 건설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운영
		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교체) 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공시설 기획	청사건립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청사 정비계획 수립
		공공건축물 관리매뉴얼 작성·보급
	공공시설 건립	공공건축물 설계·감리·공사관리 업무 추진
		시설물 인수·인계
	공공시설 업무지원	타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지원 (경미한 사항 제외)
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술 지원업무		
공공시설2		공공건축물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에 한함)
	친환경 공공시설 정책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교체) 사업 추진
	공공시설 기획	공공건축물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지원업무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공공건축물 관리매뉴얼 작성·보급
		우기 및 해빙기 등 공사장 점검계획 수립·실시
	공공시설 건립	공공건축물 설계·감리·공사관리 업무 추진
		시설물 인수·인계
	공공시설 설비공사 및 유지관리 지원	청사 및 공공건축물 설비(전기·소방·통신·건축설비) 공사관리 기술지원 업무
		읍·면·동, 사업소 등 직속기관 청사에 대한 소방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실태 지도·감독
	공공시설 업무지원	타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지원 (경미한 사항 제외)
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기술 지원업무		
교육도시과		교육도시 기획 및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선진교육도시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아산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교육도시	교육정책	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아산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교육기관 유치,지원
		학교 설립 지원
		미래장학회 운영
		아산사랑카드 운영 관리
		아산학 강좌 지원
	명문학교 육성	명문학교 육성 종합계획 수립
		명문고 육성 평가 및 지원
		아산스마트스쿨 운영
		지역인재육성반 지원
		논술교육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수능대비 집중교육 지원
		우수학생 전담 프로그램 운영
		우수중학교 상사업비 지원
		입시설명회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
		학교교육 지원
	교육환경개선 지원	
학교 내 CCTV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준비물 걱정없는 학교 운영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학교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초등학교 수영, 빙상 교실 운영	
		인성교육 운영 지원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외국어교육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추진
			국제교육교류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
			외국어 캠프 지원
			외국어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영어경시대회 및 영어축제 운영 지원
			자기주도 외국어학습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전용시설 및 여가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신고 처리 및 관리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학생 도·농 교류사업			
청소년이 안전한 아산 만들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조성 지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실 있는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마을 독서실 설치 지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선도·보호	
		시민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복지체계 마련	

	청소년 선도	청소년지원센터, 공부방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확대	
		청소년 단체육성 및 지도 감독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행사 추진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개선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자 포상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친환경 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종합계획 수립·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교육청 협의
			학교급식 관련 민관협의기구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및 관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관리
			친환경무상급식 교육 및 홍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로컬푸드 농축산물 공급 계획 수립	
		학교급식 농축산물 생산자 관리	
		학교급식 농축산물 공급업체 관리	
		학생 및 학부모 현장체험, 식생활 교육 추진	
		경로당 친환경쌀 및 곡류 공급 관리	
	어린이집, 사설유치원 친환경쌀 및 곡류 공급 관리		
사회복지과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현충·보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평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관리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및 복지관 관련 법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합 관리		

복지행정	복지행정 기획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복지정책 평가
		복지위원 업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아산행복드림사업 추진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업무
		재해이재민 구호 및 생계 지원
		부랑인 및 노숙인 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장난감도서관 업무
		현충·보훈
국가보훈사업 및 국가유공자 단체 관리		
현충·보훈시설물 관리		
참전유공자전우회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참전유공자 수당, 장례비, 사망위로금 등)		
호국보훈행사		
6·25 기념 행사		
	복지초기 심사 관리와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기획·조정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	
	임대 주택 및 기존주택 신규 입주 신청자 이의신청 조사	

복지심사	대상자 조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규 대상자 이의신청 조사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사
		보훈대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조사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조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연금 대상자 조사
		차상위 자활대상자 조사
		장애인 자립자금 대상자 조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조사
		소아암 환자 조사
		복지심사후 사후관리와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
복지관리	대상자 관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기획·조정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시행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 관리
		기초연금 대상자 변동 관리
		임대 주택 및 기존주택 신규 입주자 변동 관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변동 관리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 관리
		보훈대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변동 관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변동 관리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변동 관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연금 대상자 변동 관리
		차상위 자활대상자 변동 관리
		장애인 자립자금 대상자 변동 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변동 관리		

		소아암 환자 변동 관리
		기초생활 지원과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기초생활 지원	기초생활 지원 업무 기획·조정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보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기초생활보장 관련 월·분기·반기 등 각종 자료 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감면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증명서 발급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명령
		의료급여
	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업무	
	수급권확인 및 환수결정 통보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및 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출산 전 진료비	
	중복청구 급여비용 관리	
	투여기관 관리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 수급권자 관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여자 관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수급자 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 의료급여환급금 등 지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정 및 징수
		의료급여 제한 여부 결정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틀니 대상자 지원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 지원
		치석제거 대상자 지원
	자활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가사·간병서비스사업 추진
		희망키움 통장사업 추진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보 및 상담·관리
		생업자금 융자 및 자활기금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도·감독
		행복키움지원체계 구축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행복키움지원사업 추진
		읍면동 행복키움지원사업 평가 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희망콜, 이관콜 관리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 추진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정기탁 지원 사업
		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 관리
모니터상담 추진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체계 구축		
아산기초푸드뱅크 사업 관리		

행복키움 지원		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추진	
		희망나눔캠페인 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사업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 및 코칭서비스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렌탈 서비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서비스	
		아동 창의성 개발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공기관 등록관리 및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와 건전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여성정책기획	여성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여성친화도시 업무 총괄
성별영향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여성주간기념 사업 추진			
여성권익증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성·가정폭력 상담소 신고 및 운영 지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직장내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여성사회 참여확대		여성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참여 확대	
건강가정육성		건강가정만들기 사업총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시설운영	
		조손가족 지원	
아동복지		아동복지와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기획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상담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아동보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결함가정 및 저소득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및 결연지원
			입양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총괄
			가정학습 봉사활동
			멘토링사업
			유아교육지원 및 정책 발굴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기능 보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확대

	출산장려	저출산 대책 종합 기획·추진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보육정책 기획 및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지원	보육지원 시책 및 운영 지원	보육지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보육관련 행사 추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관리
		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 인가·폐지·휴지
		특수시책 및 보육관련 조례 제정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관리
		특수어린이집 지정 운영 및 인건비 지급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급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
		간식비 및 기본보육료 지급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보육료 보장 결정 및 중지
		보육료 지원 관리
		아이사랑카드 업무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임면 등) 관리
		보육교직원 보조금(처우개선비 등) 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책정 및 지급
경력증명서 발급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평가등에 관한 사항

보육지도	보육지도 감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수립 및 점검실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수립 및 점검실시	
		어린이집 자율점검단 구성 및 운영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체점검 및 컨설팅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행정처분 대상 어린이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다문화지원	다문화 가정지 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정 언어교육 및 방과후 교육 지원	
		다문화주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	
		통번역사업 지원	
		결혼중개업에 관한 업무	
		외국인 지원	세계인의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외국인지원 시책 추진 및 지원기반 구축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
			다문화가정 실태 및 현황 조사
			거주외국인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지역단위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현황 관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지원	
경로 장애인과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기획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대책 수립·시행 경로효친사상 보급 및 노후생활 지원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 지원·관리 노인행사 지원 노인복지기금 관리	
경로복지	노인복지 지원	노인 무료 온천욕 및 이.미용 서비스 추진 효도수당 지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문객센터 내 노인프로그램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설치 운영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치파악 시스템 구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의 집 운영관리 사할린 이주주민 특별 생계비 지원 이동빨래방 운영	
		노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관리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노인복지 시설 지원과 장묘문화 개혁에 관한 사항
경로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신축·개보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노인복지시설(여가·재가·의료·주거) 신고·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 업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설치
		노인 장기요양사업
		노인장기요양시설 신고 및 관리
		노인복지시설 수요자 만족도 조사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운영
		노인복지 미신고시설 관리
	장묘문화 개혁	장사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묘문화 혁신 주민교육 기획·추진
		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선진 장묘문화 보급
		사설묘지 사전 적법성 검토
		화장·개장 장려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추진
		시립공원묘지 조성·운영
		법인·종교단체·사설묘지 관리
		묘지설치 허가 등 묘지민원 처리
묘지·분묘 실태조사		
무연분묘개장공고 및 허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장례식장 관리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 기 획	장애인복지 향상대책
	장애인단체 육성·관리 및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관리 및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행사 지원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및 관리
	장애인 재활 및 이영시설 지원·관리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편의시설 등)
	장애인 무료급식소 지원 및 관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 보강
	장애인 방과 후 교실 운영·관리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장애인콜센터 운영 및 지원
	복지시설 입소자 사후관리 및 급여지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보호 작업장 지원 및 관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복지일자리 사업
재가 장애인 생 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급여 대상자 보장(변경) 및 중지결정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수당 지급 및 관리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보장구 건강보험(장애인)급여 실시
	장애인 의료재활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성 강화		장애인 이동성 강화대책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허가 및 실태조사)	
				공영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장애여성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심리서비스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공연기획 및 지역축제와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기획	문화예술행정 종합기획·조정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추진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육성·지원					
문화재단 이관업무 선정 관리					
문화예술인 및 인맥 DB 네트워크 구축					
음반,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사무	노래연습장 등록·변경, 지도 점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변경, 지도 점검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변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변경, 지도 점검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현지조사				
	비디오 감상실업 등록 현지조사				
	희망공연단 육성·지원				

문화예술	공연예술 지원	민속대제전 참가
		방문객센터 내 공연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연 기획 및 추진
		공연·홍보 차량 운영 활성화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유명 공연단체 초청공연
		온양온천역 공연마당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및 기획공연 활성화
		예술단 설치·운영 지원
		예술행사 순기관리 및 홍보
문화예술	문화역량 강화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지역 문화예술 창작 공동체 지원
		각종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공연단체 지원 관리
		문화예술전문가 육성
		온양문화원 지원
		아산시립합창단 운영
		(사)한국예총아산지부 운영 지원
		어문 진흥 및 국어정책에 관한 사항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도시 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문화의 집 운영
문화예술 산업육성	문화예술 산업육성	유무형 문화예술유산 발굴·보전
		문화예술·공예품 발굴
		문화콘텐츠 개발 보급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관리
		인쇄·출판업 허가·등록·신고 처리 및 관리
		종교에 관한 업무
	지역축제 종합기획	지역축제 통합 추진 시스템 구축
		문화재단 위탁 지역축제 추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및 연계 활성화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관리
		축제관련 위원회 운영 및 기관단체 협력
		아산시 축제위원회 운영
		지역향토축제 제안공모제도 및 포럼 기획·운영
축제의 타지자체 교류협력 증진 및 시민참여 자문기구 운영		
관광기획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 기획	문화관광행정 종합 기획·조정
		지자체 연계 관광협의회 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관광분야 국제행사 및 이벤트 행사 유치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개선
		관광진흥협의체 지원 육성
		관광정책 자문단 운영
		관광지 방문객 통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거점 중심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치 목적의 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사와 공동 상품 기획
		주요 관광지 팸투어 기획
		역사관광 테마코스 개발
역사·문화·웰빙 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시티투어 운영 지원		

		주요 관광기반시설 확충
		폐철도부지 관광자원화
		근대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
	관광홍보	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관광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사 육성
		관광불편 신고사항 접수·처리
		국내외 관광홍보전 참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지 및 축제 홍보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체 육성
		관광사진공모전 개최
온천관광 개발	온천관광지 개발과 온천관광 마케팅,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온천관광 활성화	온천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플랜 수립
		온천의료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온천지구조성계획 및 자원조사 개발
		온천축제 개최
		옹기전시체험관 육성
	온천 개발	온천관광특구 조성 및 관리
		보양온천 헬스케어단지 조성
		온천박물관 건립
		온천 관련 허가·신고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보양온천 지정·관리
		온천수 보전관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온천업체 육성 지원	
	관광지 개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민자유치	
		주요 관광기반시설 확충	
		외암도예촌 도비보조 공예체험관 건립	
		고택 및 전통가옥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사업체 관리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관리	
	문화재		문화재·외암민속마을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재 관리	문화유적지 주변정비사업 종합 기획 추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충효열 시설물 보수·정비			
향교·전통사찰 문화재 행사 보조			
박물관·민속관		박물관 지도·육성	
		시립역사박물관·미술관 건립	
		외암민속관 유지·보수 및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박물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 관련 업무	
		문화재·향토 유적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호 관리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문화재 매매업소 인·허가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문화재 자문교수단 운영		

		문화유적 책자 발간
		아산시지 발간
		읍·면·동 및 마을 향토지 발간 지원
체육육성과		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시단위 생활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회 운영·지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생활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확충
		공공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 장애인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시설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직장체육시설 지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체육시설업 신고·신청·등록·지도·감독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스포츠바우처사업
		체육발전 종합기획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전국체전, 도민체전 유치 및 업무 추진
		각종 경기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전문체육인 육성·지원
		아산시 직장체육팀 육성

	스포츠 마케팅	전문체육 육성	시민체육대회 개최	
			아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 지도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경기 가맹단체 지원	
			지역 체육 인적역량 강화	
		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이순신빙상장체육관 등) 운영	
			공공체육시설 수익시설 임대 및 관리운영 업무	
			건강 스포츠교실 운영	
		수영장		수영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수영장 운영	시민체육관·수영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시민체육관·수영장의 운영·이용허가·시설유지			
	수영장 회원등록과 회원명부 정리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홍보			
실내체육관 운 영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계획 수립 추진			
	실내체육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국체전 준비단	체전기획		전국체전 기획에 관한 사항	
		체전기획	3대 체전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계획 수립	
			전국체전 국도비 예산 확보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전국체전 홍보·교통·숙박대책 수립·추진	
			실과별 과제 발굴 및 보고회 운영	
	체전시설		전국체전 시설에 관한 사항	
		체전시설확충	전국체전시설 확충	
			경기장 보수 및 보강 추진	
			경기장 공인, 승인 등	
			경기장 주변환경 정비 및 부대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운동장 운영	종합운동장 연간 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종합운동장 시설의 대관·수익허가·운영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 보수	
		종합운동장 민간 대여 관리	
		종합운동장 시설 각종 세외 수입금 관리	
		종합운동장 활용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경제과		경제정책 종합기획	
경제활성화	경제정책 기획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역경제인 단체 지원	
		공산품 품질 관리	
		물류단지 지정변경 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과학기술혁신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지역협력 연구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산학협력 및 연구중심대학 운영	
		산학연관 협력 R&D,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	
	담배소매인 등 관리	통신·방문·복권판매업 신고 및 관리	
		담배소매인 신고·대부업 등록 및 관리	
		전화권유·방문판매업 신고 및 관리	
			고용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및 노동정책 종합 기획·조정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노동조합 지원			
일자리 공시제 계획 수립 운영			
실업자대책 종합 추진			

고용지원	고용증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유로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사업
		아산지역 고교출신 시민 취업지원 등 인센티브 사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기업 참여 일자리 박람회 추진
	일자리 기획	취업 걱정 없는 아산 구현
		취업지원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일자리 창출 실적 통계
		종합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발굴단 운영
	취업상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 장애인 취업 지원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일자리 알선	취업정보, 노동시장 정보 제공
		온라인을 이용한 취업정보 실시간 제공
		미취업자·전문인력 일자리 제공
		실업자 대책 및 구인구직 알선
		구직자·기업체 상설 만남의 날 운영
		장애인 채용박람회 추진 및 취업활동 지원
	참여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및 아산형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아산형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아산형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 및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산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지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관광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시장 육성 및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의 관광시장화 사업 종합기획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장기계획 수립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 사업		
		지역상품권 발행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품물시장 운영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추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록 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단속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 방지	
			가격표시제 시행	
			소비자원관련(과장광고 단속, 허위광고 단속)	
				일반에너지 관리와 대체에너지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리·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가스, 석유, 석탄 업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관리				
석유판매업소 등록·신고·관리				

에너지	일반 에너지	고압가스 허가, 등록, 신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계량기 신고 수리·관리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전원개발사업 협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광업권 관련 업무
		연료 유통 질서 확립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대체 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 총량(데이터) 관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점검
		공공기관 태양광시설 도입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
		태양광 지붕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 지원
전기사업(태양광발전 500kw이하) 인허가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및 등록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설립(신·증설, 변경 등) 승인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사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등록(변경)사항
		제조업체 일제조사
	중소기업 지원	기업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관리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지원 및 관리
		유망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공공구매업무 추진
		아산시기업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투자유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 전략	국내외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적극적인 기업유치 체계 구축
		기업유치관리 및 지원업무
		기업유치 정보파악 및 조사 분석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총괄
		외자유치 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외국인 잠재 투자자 발굴
		외국인 투자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처리
	투자유치 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 체결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투자유치 정보수집 및 대상사업 발굴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및 조정
		투자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기업이전·투자보조금 지원
외투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수출 및 통상지원	아산시 수출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수출업체 관리 및 지원	
	국제 통상교류 지원	
		산업단지 종합 기획과 조성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획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운영	
	산업단지 인허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아산테크노밸리 조성 지원	
	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선장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아산제2테크노밸리 조성 지원
			민간 산업단지 조성 지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장 설치
			산업단지 입주 계약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운영		
	농공단지 조성 분양 및 입주계약		
	산업단지 관리		산업단지 관리와 단지내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관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공장등록 및 관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장등록 및 관리	
		인주일반산업단지 관리	
		인주단지 환경기초시설 관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폐수 관리	
		농공단지 관리	
환경보전과		환경정책 종합기획과 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	자연환경 보전관리업무 총괄 기획	
		주요사업 자체 환경성 검토	
		환경기본조례 제정·운영	
		전국오염원 조사	
		대기배출원 조사	
		기타 환경관련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환경정책	환경오염 방지	공동 오염방지시설 설치 승인
		토양·대기오염 측정망 지정 운영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가동개시 신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신고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총괄관리
		석면피해구제 및 관리
		석면안전관리, 건축물석면조사 등 석면 관리 신고
		환경기술인 교육
		유독물 관련 영업 등록
		야생 동식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야생동식물 인공증식 및 수렵장 설정 관리		
수렵면허 발급 및 관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야생 동식물 수입허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		
동식물 생태현황지도 등 작성 관리		
야생 동식물 단체 관리		
녹색성장	녹색성장과 환경교육 및 환경단체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사업 총괄	
	저탄소녹색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기후변화 대응관리 업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기후변화 협력		녹색제품 구매 관리
		푸른아산 21 실천협의회 관리 및 지방의제 선정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그린리더 양성 교육 및 활동 지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및 인형극 추진
		기후변화 대응 체험교육장 관리
환경지도		환경사업장 관리와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환경지도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 계획 수립
		배출가스, 비산먼지 환경분쟁 조정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관리
		특정공사 사전 신고·관리
		생활소음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관리
		진정·건의·신문고 등 환경민원 관리
		환경감시원 운영 관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관리
		중소기업 환경관리기술 지원
	사업장 관리	환경재난관리 사업장 지정 및 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수질오염 사고대책 수립 및 사후 관리		
		호소·하천 수질관리 및 생태 복원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	수질보전	수질환경 보전 및 생태복원 종합대책 수립·추진	
		비점오염원 관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계획 수립·추진	
		저수지 수질개선 시범사업	
		공공수역 수질개선 추진	
		호소 및 하천 수질오염 측정망 관리·운영	
		생태습지 조성	
		수질관리 체계 구축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추진	
		1사1하천가꾸기 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	
	생태 복원	자연형 하천 정화·복원 사업	
		실개천 살리기 추진	
		수계별 오염원 실태조사 및 관리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관리	
	오수		오수·가축분뇨 및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공중화장실 설치·지원 운영관리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화장실 분뇨 수집·운반			
열린화장실 지정 및 운영			
오수		오수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분뇨 관련 영업허가, 설계시공업 등록 및 지도점검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	

○스브스

		프구르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가축분뇨재활용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가축사육 제한 관련 업무
			가축분뇨 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 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준공·지도점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생활폐기물 줄이기 홍보·지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
			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행
			환경미화원 배치 및 관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환경미화	도심지 가로청소 실시 및 청소계획 수립
			국토대청결운동 종합계획 수립·추진
			시가지 가로청소 내실화
	재활용	재활용 정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촉진
			숨은자원찾기 등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시민운동 추진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생산자 책임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수집운반·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지도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재활용 촉진	자원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운반
		폐기물처리 신고 및 지도 점검
		재활용품 매각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지도점검	
자원화시설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소각·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화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종합계획 수립
		매립시설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생활폐기물 자원화 전처리 시설 운영
	소각·매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
		폐기물 위생 매립시설 조성·관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
		신동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
		신동매립장 시설물 및 현장근무자 관리
		신동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 추진
		배미동 쓰레기소각시설 내 식물원 조성
	주민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 주민갈등 해소 대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주민지원기금 조성·관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운영
		주민이주 및 용지보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조성 및 관리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관리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관리	
		건설·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	
		건설·사업장폐기물 관련 통계 및 민원처리	
		순환 골재 재활용 의무사업장 관리	
산림녹지과		산림·녹지정책 종합기획과 채석허가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산림정책	임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육성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관리	
		임업 정책자금 지원	
		고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푸른숲 선도원 육성 관리	
	채석허가	채석 허가 및 사후관리	
		채석허가지역 사후 활용대책 수립·추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푸른도시	산지이용	산지이용 구분 조사·관리
			산지 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녹지정책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	공원녹지 경관 심의
			공동주택, 건축물, 공장 등 조경협의 및 준공 검사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범시민 헌수운동 추진
	임산물 생산	특용수 개발 및 보급 임산 부산물 증산 임업진흥 촉진지역 관리
산림보호		산림자원보호, 재해예방, 공유재산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보호	산림보호 지도 단속계획 수립
		불법산지전용 및 벌채 등 산림내 위법사항 사법처리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관리
		자생란 등 희귀식물 보호관리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해제관리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관리
		숲사랑지도요원 위촉 및 관리
	산불방지	산불방지종합대책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산불예방, 홍보, 진화업무 추진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산감기동대 선발운영
		산불방지 선진 기계화사업 추진
	산림재해예방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
		산사태 취약지 지정관리
		사방지 지정, 해제 관리
		사방댐조성 및 관리
		야계사방조성 및 관리
		산사태예방사업단 운영
		산림병해충종합방지대책 수립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해충 지상방제사업 추진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임도조성	중장기 임도조성계획 수립
		임도(간선, 작업)조성사업 추진
		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유지관리사업 추진
	시유림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
		시유림 취득, 처분,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시유림 실태조사 관리
	강당골개발	강당골가꾸기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강당골가꾸기 개발사업 추진
		강당골가꾸기 토지매입업무 추진
		조림·숲가꾸기사업, 산림경영 등에 관한 사항
조림	경제림조성	
	큰나무, 공익 조림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조림지 사후 관리	
숲가꾸기	숲가꾸기사업에 관한 사항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산림경영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경영 (협업, 대리, 겸업임업 등)에 관한 사항	
	임업진흥권역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입목 벌채 신고 및 허가	

산림경영	목재이용 및 활용	수목굴취 신고 및 허가
		산림보호구역내 시업허가
		목재부산물 활용 및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
	임업기계화	임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사후관리
		임업기능인 양성
	산림자원 활용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
		산림욕장 조성
		숲자원 발굴 육성
		산림경영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등산기반시설 확충	등산로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숲길자원 발굴 육성
		숲길조성 및 관리
기타 등산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공원조성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시행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심녹지 등 신규 공원 조성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가로변 꽃길 조성 및 유희지 꽃단지 조성	
	도시공간 녹화	시 전지역 공원화 사업
		도시림 조성 사업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수립 시행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양묘장 관리	가로공원 및 옥상, 벽면녹화 사업
		학교 및 공공시설 담장 허물기 사업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우량 조경수 생산 및 보급
		무궁화 육성 보급
		화훼포 꽃묘 생산 및 관리
		도시공간 녹화 및 공권관리와 가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	공원시설물 설치·관리, 보완·정비, 안전관리
		공원 녹지 점·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풍기호수, 도고, 배방, 둔포 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원 등산로 개설·정비·관리
		공원·녹지 조경수목 보식 및 유지관리(신도시 제외)
		시청사 주변 조경수 유지관리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조경수목 관리
		도시녹화사업단 운영
		어린이 놀이터 관리
		가로공원
	타부서 소관 사업 가로수 조성 식재 협의	
	가로수 훼손변상금 부과징수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도로 중앙선 부근 녹도 조성·관리		
인도차도 경계부근 녹도 조성·관리		
녹색 가드레일 설치·관리		
도로변 옹벽·철조망 차폐조경		
교차로 원형로타리 변경 및 교통섬 조경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교통수요정책, 육상운송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택시사업 선진화	아산-천안 택시사업구역 조정 및 협의
		브랜드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운영 지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법인택시 증차 인허가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신고
		법인택시 사업계획 변경 및 수송시설 확인
		택시증차 계획 수립·검토
		택시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가세 경감액 사용 지도
	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신고 수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확보 및 지급, 지도감독, 행정처분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신규등록, 변경, 말소		
물류창고업 등록 및 지도감독, 처분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확인 및 행정처분		
전세버스, 특수여객, 대여사업운송사업 인허가 및 지도 감독		
교통수요정책 수립 및 시행	교통 수요정책 수립 및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관리	
대중교통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마중교통체계 추진
		시내버스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
		한정면허 및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여객 터미널사업 인허가 및 지도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환승센터 구축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시책 개발 및 시행	
교통지도		교통안전·주정차 및 운수사업법 지도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지도	교통지도단속 계획 수립·시행	
		교통사고 줄이기 지도	
		교통안전 점검 및 행정처분	
		경찰서 교통지도단속 협의 및 행사 지원	
	주정차 지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및 장비 관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전산처리	
		과태료 체납차량 독촉·압류·해제	
		견인차량 관리	
	운수사업법 지도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지도단속	
		여객자동차 지도·행정처분	
		이사회물 점검·지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단속	
			교통시설물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기본계획 수립·집행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증진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시설물(신호등,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관리			
생활도로 개선 사업			

교통시설		보행우선구역 개선 사업		
		교통규제시설 주민민원 처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항공장애등 설치 관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		
	첨단교통 시스템		첨단교통시스템 기획·설치·운영·관리	
			표준노드링크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교통신호 중앙제어사업 추진	
			교통정보 통합상황실 설치·운영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문화 선진화 시범지구 운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조례 제정 및관리	
	교통광장 관리		신도시 교통광장(팬션2광장) 시설물 관리 총괄	
	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법 관련 업무와 자동차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계획 수립·추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건설기계 관리사업 등록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지정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번호판교부대행업 지정	
			택시미터수리 전문검정기관 지정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 신고	
			건설기계사업체 주차장시설 보유 증명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자동차 무단방치 지도·행정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도·행정처분		
		정기점검기간 경과차량 행정처분		
		삭도·궤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관리		
		강제보험 미가입 운행 범칙자 특수사법경찰 업무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자 특수사법경찰 업무		
		무등록 자동차 정비 범칙자 특수사법경찰 업무		
	자동차 과태료TF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감경부과 업무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업무	
			의무보험 미가입자 본부과 처리 및 수납업무	
		의무보험 과태료체납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자 차량 및 부동산등 압류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업무	
			의무보험 미가입자 체납고지 및 수납업무	
			의무보험 체납자 납부독촉 업무	
			의무보험 체납자 결손 및 부활처리 업무	
			과태료 체납자 예금 및 급여압류등 업무	
건설과			건설행정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	건설행정기획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전문건설업, 골재채취업 관리			
	국유재산관리(국토해양부 소관 비법정 도로부지)			
		농촌마을 및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농촌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농촌정비	농촌마을 정비	농촌마을 문화·복지 지원사업
		농촌마을 경제지원(체험·소득)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경관·생태)사업
		농촌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일반지구 및 대구획 경지정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관리	
	배수개선사업 집행	
	개간사업 인허가 및 관리	
	농촌소류지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 및 관리	
	한해대책	
	농업용 지하수개발 및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환지청산 및 등기촉탁 등	
		받기반 정비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온천천추진		온천천 생태복원 정비사업 추진	
	온천천 생태복원	온천천 생태복원 정비사업 추진	
하천관리		하천복원·정비 및 사용허가와 온천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복원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 총괄	
		하천·소하천 개보수 및 하도 준설	
		하천·소하천·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국가하천 곡교천의 생태하천 조성	
		곡교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	
		수해 위험지구 개선 및 제방단면 유지보수	
		국토해양부 및 충남도 소유 폐하천부지 관리	
	하천사용허가	하천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육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정비 및 계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수립 및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조례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계획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리
		도시계획현황 통계(UPSS)
	가로등	도로공사 병행 설치 이외 가로등·보안등의 설치·보수·유지관리
		가로등 광원 교체공사
		가로등 신설 및 개량사업
개발행위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도시·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배방읍,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6동)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작물설치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의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토석채취 개발행위
		토지분할 개발행위
		관련실과 개발행위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준공
개발행위2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도시·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영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공작물설치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의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토석채취 개발행위
		토지분할 개발행위
		관련실과 개발행위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준공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도시.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의제처리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도로과		도로행정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도로행정	도로행정 기획	도로행정 종합기획 조정	
		국도 및 지방도 미불보상 업무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공유재산 관리	
		도로관리 복합민원 처리(건축, 공장 등)	
		인허가대상 불법 도로점용자 행정처분	
도로시설		도로개설 및 도시가로망 확충에 관한 사항	
	도로 개설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개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건설 관련 협의 및 건의, 국도비 확보	
		도로개설 구역 내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 신설	
		지방도 및 시·군도 교통량 조사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도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사도개설 허가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및 부과징수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 지정
도로관리		도로 유지관리 및 위험도로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도로교통안전심의회 운영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총괄 관리
		법정도로교량, 비법정도로 장대교량(50m이상) 개설 및 관리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법정도로 노면정비 및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접도구역 관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철도건널목 개량
		교량·육교·보도·지하도, 승강기 관리
		도로보수원 관리·교육
		도시계획도로 전력설비 및 기타 지하매설물 지중화
		위험도로 관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도로 설해대책 수립·추진		
과적 및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지도 단속		
노점상관리		노점상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공로상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점용자 과태료 처분·고발
		공로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가로환경 지장물등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

자전거문화	자전거 활성화	기존 도로를 활용한 자전거코스 개발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내 자전거 시설물 관리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	
		아산신도시 U-City 통제소 및 U-Bike 자전거 운영	
		방치자전거 처리	
		시민 자전거 무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자전거 주차장 확대	
		자전거 정비업소 지정 운영	
	건축과		일반건축행정 종합기획과 건축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건축행정	건축행정건실화
재해주택 관리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및 소유권 경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정정, 소유권변경, 말소, 발급			
건축물 대장 관리			
부동산 등기부 말소를 위한 부존재증명 발급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일반건축	건축 지도원 관리	
		건축조례개정 및 운영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 지도관리	

건축허가		건축공사장 등 점검
	건축허가	장기 미준공·미착공 건축 허가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건축 통계 관리
건축신고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건축신고	건축신고 관련 업무 종합처리
		장기 미준공·미착공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관리
		시특법 포함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지도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건축지도	건축지도업무 계획수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건축물유지관리업무
		건축지도업무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특정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
		건축위원회(전문위원) 운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이행강제금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디자인 정책		경관디자인 및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디자인 정책	도시경관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총괄
		경관조례 제정·운영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 수립

경관디자인		야간경관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운영규정 강화	
	경관디자인 개선	경관개선사업	
		경관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아산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운영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노후주거 환경개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주택과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업무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불법행위 지도 단속			
주택법에 의한 위법 건축물 관리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방법·규약 결정 및 변경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관리 생활민원 해결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등 관리			
주택조례 제·개정 운영			
주택지원		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 및 분양전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관리	
	임대아파트 매각허가 및 신고 업무		

	임대주택 관리	임대아파트 특별수선 총담금 관리
		임대아파트 임대료 보증보험 가입 관리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임대아파트 시설물 지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택 관리업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주거복지	주거복지향상대책 추진
		전세임대업무(기존주택, 신혼부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지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운영 및 관리
		매입임대지원업무
주거급여업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주택건설 및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주택건설 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주택보급율 산정	
	관내 미분양 사업장(현황) 관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장 시공(안전, 품질) 실태 점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미착수 주택건설사업 관리	
	장기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주택개발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격제한제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이상)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환급
	주택법에 의한 관련지침 기준고시 및 질의 회신
재개발 및 도시환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착공 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반분양)
	사업시행자 지도 및 사업장 점검
	준공인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예비안전진단 및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재건축 판정
	사업시행인가
	회계감사기관 및 감점평가기관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감리자 지정 및 관리
	착공 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반분양)

		사업시행자 지도 및 사업장 점검	
		재건축부담금 부과 및 징수	
		준공인가	
		가로환경 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가로환경 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관리	
		가로환경개선계획 및 사업 추진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가로환경 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옥외광고물 관련 특정구역 지정·관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물 관련 위탁계약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지도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발정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발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소관 사업 인허가 관련 협의			
소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소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온양 1, 2, 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소관 도시개발사업 보상 업무
		소관 도시개발사업 분양 활성화 대책 기획 및 추진
개발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
		배방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
		도고 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소관 사업 인허가 관련 협의
		소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소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소관 도시개발사업 보상 업무
개발3	도시개발사업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음봉 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 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토지보상업무 지원
		소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소관 도시개발사업 책임, 시공감리자 지정
		소관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확보 계획 수립·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시공·감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유관기관 협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영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온양중심상권 개발사업 추진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운영	
		신도시 지원과	신도시개발
신도시 기획	아산신도시 개발정책 종합 기획		
	아산신도시 보상업무 지원		
	아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아산신도시 유관기관 협력업무		
	아산신도시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		
아산신도시 개발	아산신도시 해체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난개발 예방대책 추진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종합 추진		
	아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아산신도시 경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		
	아산신도시 주변지역 광역 교통계획 수립		
	아산신도시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조정		
	아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도시기반시설	싸이클론타워 기부채납 및 관리·활용대책 수립		
	신도시 공공시설물 등 명칭부여 및 고유지명 보전		

		당정역 신설 협의	
신도시기반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물류시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아산산업단지	아산 D/C1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기반시설 조성	
		아산 D/C2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기반시설 조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교통물류시설	아산신도시 교통·물류 관련 시설 조성 협의	
		당정지구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 지원	
	경찰대학 지원		경찰타운 조성 사업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국립경찰대학 이전 지원
경찰대학 이주단지 조성 사업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찰교육원 이전 지원			
경찰 수사연수원 이전 지원			
토지관리과		토지행정과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토지행정	토지행정	토지업무 기획·조정	
		외국인토지 취득 신고·허가·관리	
		부동산중개업 등록·이전·휴폐업 신고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 및 사법처리	
		부동산 실명제 관리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지적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측량과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
	지적관리	지적공부 관리
		공공용지 관리 및 임야등록전환 처리
		지적복구 및 등록사항 정정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 정비
		미등록지 신규 등록
		지적민원 처리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토지표시사항 오기정정
		지적관리 관련 소송업무
		지적측량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 감독	
	토지이동지 일체조사 정리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조사	
	지적 불부합지 정리	
	임야분할 등록 전환	
	연속도 편집 정리	
	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지가정보제공 및 주민의견수렴 처리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 운영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부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압류, 공매 등)
공간정보		공간정보사업 기획과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기획	공간정보 사업수행 및 기획관리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중복투자 방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관리
	공간정보 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GIS) 운영 및 유지관리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도시행정포털시스템 운영 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항공사진연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유지관리 GIS(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 및 감독 GIS 감리용역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정사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수치지형도, 도시기준점 및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지형, 지물 변동자료 조사 및 취합 국가기준점(삼각점,수준점,통합기준점) 및 도시기준점 관리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행정지도 제작

		원터치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운영
	부동산 정보관리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지적(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 발급
		전자민원 G4C 처리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조상땅찾기(지적전산자료 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읍면동 발급업무 관리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새주소	새주소 정착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관련시설 설치·유지보수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지명위원회 운영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및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대국민 홍보
		도로구간 조사 및 설정
		비건물 지역 지점번호 부여 및 관리
		주소의 일괄 변경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도로명 주소대장 발급

		국가기초구역의 설정, 변경, 폐지
지적재조사		지적의 고품질화 및 선진화의 맞춤형 지적행정에 관한 사항
	고품질 지적구축	지적재조사 특별법 운영 관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관리, 감독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도면등 자료정비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추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검사 및 관리
		지적확정 측량 검사 및 관리
		지적측량(기준점) 검사, 관리
	맞춤형 지적행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구성 운영
		부동산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사후관리
	고객만족 지적민원	소유권변동사항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 및 등기자료 정비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아산시 고시 제2014-256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07.

아 산 시 장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제2014 - 0034호 (2014. 10. 07)		
공유수면의 종류	하천	소유자	국(건설부)
공유수면의 위치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 295번지(275-1번지선)		
점용면적	175m ²		
점용목적	경작		
실시계획인가 대상여부	인가 대상이 아님		
점용기간	2014. 10. 07. ~ 2018. 12. 31.		
점용자	주소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34번길 20, 203호(태경하나빌)	
	성명	이 경 숙	

아산시 고시 제2014-2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창암리, 기산동 일원에 경찰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창암리, 기산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 2) 명 칭 : 경찰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대로2-18호, 중로2-97호, 광장35호)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로 L=755m B=35m, 중로 L=360m B=15m, 광장 A=62,904㎡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1) 성 명 : 아산시장
- 2) 주 소 :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320,608	101,769					
1	황산리	444-2	도	5,667	123	국	농림부			
2	황산리	445-2	도	2,134	317	국	농림부			
3	황산리	16-9	답	2,961	1,200	문창성	아산시 온천동 1806			
4	황산리	16-8	답	2,991	1,623	이정욱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00			

5	황산리	16-7	답	2,944	2,028	이정옥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11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 권
6	황산리	16-6	답	1,138	948	이정옥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00			
7	황산리	16-5	답	1,798	1,328	정이숙	아산시 용화동 584 온천마을아파트 104/803	강서구		압류
8	황산리	16-4	답	3,069	1,599	이홍렬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569-3			
9	황산리	16-3	답	2,900	339	김태용	아산시 용화동 426 백자아파트 2/106			
10	황산리	448-2	구	5,607	516	국	농림부			
11	황산리	25-6	답	2,971	98	이한구	아산시 기산동 316-1			
12	황산리	25-5	답	2,927	2,097	김태용	아산시 용화동 426 백자아파트 2/106			
13	황산리	25-4	답	2,923	2,610	한광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29	온양농업협동 조합	아산시 온천동 242-13	근저당
14	황산리	25-3	답	648	324	이만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11-31			
15	황산리	25-2	답	2,193	179	이만재	연천군 청산면 공평리 510-10			
16	황산리	449-2	도	4,897	330	국	농림부			
17	황산리	27-3	전	4,766	1,548	한인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29			
18	황산리	27-2	전	3,072	2,587	한인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29			
19	황산리	27-12	전	1,890	852	박성호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39번길 11	온양농업협동 조합	아산시 방축동 204	근저당
20	황산리	445-10	구	8,395	2,494	국	농림부			
21	황산리	469	도	489	84	국	농림부			
22	황산리	28-11	답	1,842	139	김현직	서울 용산구 용문동 56-1			
23	황산리	35-1	답	1,641	1,153	한인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29			
24	황산리	470	도	242	242	국	농림부			
25	황산리	34-10	답	1,765	1,735	이청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88			

26	황산리	34-9	답	988	818	이청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88			
27	황산리	34-8	답	1,118	799	이한기	아산시 기산동 319-2			
28	황산리	34-7	답	2,398	1,301	이한기	아산시 기산동 319-2			
29	황산리	34-6	답	2,289	917	김기영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42			
30	황산리	34-5	답	2,318	764	김기영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42			
31	황산리	34-4	답	2,336	719	이한익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06			
32	황산리	34-3	답	2,368	723	이한익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06			
33	황산리	34-2	답	2,350	732	이한익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06			
34	황산리	410-9	천	2,936	73	국	농림부			
35	황산리	45	답	1,908	486	한양수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29			
36	황산리	46-10	답	900	205	이출상외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46, 39동 1301호			
37	황산리	46-9	답	1,701	384	이출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46, 39동 1301호			
38	황산리	46-8	답	1,114	248	이한기	아산군 온양읍 기산리 319-2			
39	황산리	46-7	답	964	217	이한기	아산시 기산동 319-2			
40	황산리	46-6	답	2,622	476	이한기	아산시 기산동 319-2			
41	황산리	455-2	도	2,765	2,306	국	농림부			
42	황산리	46-5	답	2,364	472	이한기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63			
43	황산리	34-1	답	2,339	713	박순호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108-4			
44	황산리	459	도	677	226	국	농림부			
45	황산리	30-11	답	2,311	697	김수영	아산군 온양읍 기산리 338	온양농업협동 조합	아산시 온천동 242-13	

46	황산리	30-10	답	2,332	703	전의이씨강원 도사공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273			
47	황산리	30-9	답	1,185	847	전의이씨상빈 공파중친회	온양시 기산동 261-2			
48	황산리	46-4	답	2,143	484	이한기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63			
49	황산리	46-3	답	2,137	637	박헌재	온양시 기산동 316	이순자	아산시 기산동 316-3	가처분
50	황산리	46-2	답	440	440	박헌재	아산시 온양읍 기산리 316	이순자	아산시 기산동 316-3	가처분
51	황산리	30-5	목	2,393	900	김대경 외1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30-5	온양농업협동 조합	아산시 방축동 204	근저당
52	황산리	30-4	답	2,907	739	백남학	아산시 방축동 28			
53	황산리	30-3	답	2,081	464	최순희 외6	아산군 온양읍 기산리 354			
54	황산리	30-2	답	903	144	한정자	아산시 기산동 137-6			
55	황산리	30-1	답	2,943	206	한정자	아산시 기산동 137-6			
56	황산리	445-7	구	604	604	국	농림부			
57	황산리	454	도	392	305	국	농림부			
58	황산리	47	창	949	949	진기장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2 동명아파트 201/601			
59	황산리	20-12	도	2,178	1,231	공	아산시			
60	황산리	20-13	도	2,772	660	공	아산시			
61	황산리	448-1	구	418	270	국	농림부			
62	황산리	23-12	도	283	283	국	건교부			
63	황산리	23-13	도	637	621	국	건설부			
64	황산리	23-14	도	1,614	1,077	국	건교부			
65	황산리	23-15	도	3,573	2,359	국	건교부			
66	황산리	29-12	도	337	337	공	아산시			
67	황산리	29-4	답	1,922	318	소금숙	아산시 신인동 213			
68	황산리	29-13	도	2,362	1,666	국	건교부			
69	황산리	29-5	답	578	530	공	아산시			
70	황산리	29-14	도	2,842	1,529	공	아산시			
71	황산리	445-5	구	773	114	국	농림부			

72	황산리	445-6	구	502	356	국	농림부			
73	황산리	30-12	도	105	105	국	건교부			
74	황산리	30-6	답	468	468	김대경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52	온양농업협동 조합	아산시 방축동 204	근저당권
75	황산리	30-7	답	228	228	국	건교부			
76	황산리	410	천	50	50	국	농림부			
77	황산리	411-1	도	35	35	국	건교부			
78	황산리	455	도	95	95	국	농림부			
79	황산리	456	구	6	6	국	농림부			
80	황산리	46-1	답	164	164	국	건교부			
81	황산리	20-14	도	1,170	184	국	건교부			
82	황산리	20-15	도	2	2	국	건교부			
83	황산리	23-6	답	595	35	권혁무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96			
84	황산리	23-7	답	2,577	24	권혁무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196			
85	황산리	23-16	도	337	337	국	건교부			
86	황산리	449-1	도	281	205	국	농림부			
87	황산리	445-4	구	287	212	국	농림부			
88	황산리	29-6	답	122	50	공	아산시			
89	황산리	29-7	답	2,047	676	윤성호 외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8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30-605			
90	황산리	29-15	도	923	911	국	건교부			
91	황산리	29-8	답	2,959	131	이충복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388			
92	황산리	30-13	도	409	409	국	건교부			
93	황산리	30-14	도	1,319	1,024	국	건교부			
94	황산리	30-15	도	1,146	1,115	국	건설부			
95	황산리	30-8	도	2,342	1,136	국	건교부			
96	황산리	30-16	도	52	52	국	건교부			
97	황산리	445-8	구	365	365	국	농림부			
98	황산리	455-1	도	542	542	국	농림부			
99	황산리	46-11	도	1,567	1,041	국	건교부			
100	황산리	46-12	도	1,446	1,261	국	건교부			

101	황산리	46-13	답	34	34	공	아산시			
102	황산리	457	구	19	19	국	농림부			
103	황산리	410-3	천	649	193	국	농림부			
104	창암리	515	도	581	6	국	농림부			
105	창암리	512	구	810	22	국	농림부			
106	창암리	513	도	1,331	202	국	농림부			
107	창암리	43-2	도	221	221	공	아산시			
108	창암리	35-8	답	1,194	958	행정임	아산시 방축동 101-15			
109	창암리	35-7	답	2,225	1,390	합준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72	유구농업협동 조합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63	근저당
110	창암리	35-6	답	2,689	1,200	이문용	아산군 신창면 창암리 12			
111	창암리	35-5	답	2,937	1,080	박종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13-15			
112	창암리	35-4	답	1,746	569	박순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7길 5-1(원성동)			
113	창암리	35-3	답	1,891	520	김석호	아산군 신창면 창리 12			
114	창암리	35-2	답	3,480	603	김석호	아산군 신창면 창암리 12			
115	창암리	42-2	도	43	43	박천석	아산군 신창면 창암리 12			
116	창암리	39-4	도	76	53	박계섭	아산군 신창면 창암리 126			
117	창암리	39-3	도	89	39	박순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7길 5-1(원성동)			
118	창암리	514	구	968	710	국	농림부			
119	창암리	458-6	천	6,518	788	국	건교부			
120	창암리	503	천	25,143	538	국	건교부			
121	창암리	461	도	404	15	국	건설부			
122	기산동	373-2	도	209	186	국	건설부			
123	기산동	202-4	도	787	785	공	아산시			
124	기산동	361-2	천	636	453	국	농림부			
125	기산동	361-1	천	5,964	1,076	국	농림부			
126	기산동	201-2	답	2,137	880	원혁제	방축동 134-1 남산현대아파트			

							103-304				
127	기산동	200-13	답	1,082	257	신용원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200-7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128	기산동	200-11	답	208	208	공	아산시				
129	기산동	200-6	답	2,134	306	김수영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7 아산아이파크아파트 102-50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130	기산동	200-12	답	70	70	공	아산시				
131	기산동	202-1	답	2,932	927	원혁제	방축동 134-1 남산현대아파트 103-304				
132	기산동	202-5	도	2,331	1,610	공	아산시				
133	기산동	202-2	답	1,814	691	이난희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0, 104-804호(백석마을 아이파크)	규암농업협동 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3-3	근저당	
134	기산동	202-6	도	3,385	1,736	공	아산시				
135	기산동	202-3	답	1,223	288	이난희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0, 104-804호(백석마을 아이파크)	규암농업협동 조합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3-3	근저당	
136	기산동	203-4	도	2,371	1,848	국	건교부				
137	기산동	203-2	답	347	195	국	재정경제부				
138	기산동	203-1	답	1,792	148	김한식	아산군 온양읍 기산리 218				
139	기산동	203-3	도	23	23	국	건교부				
140	기산동	205-1	도	760	529	국	건교부				
141	기산동	207	답	3,789	201	박주명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 158-2	배방농업협동 조합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60-6	근저당	
142	기산동	208	답	1,177	29	원재수	아산시 기산동 141-7				
143	기산동	206-1	도	1,300	911	국	건교부				
144	기산동	373	도	91	19	국	건교부				
145	기산동	368	구	2,288	17	국	농림부				
146	기산동	368-1	구	136	101	국	농림부				
147	기산동	212-1	도	583	583	공	아산시				
148	기산동	215-4	도	1,615	963	공	아산시				
149	기산동	212	답	2,257	418	김순태	천안시 다가동 353-20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150	기산동	215-5	도	1,907	956	공	아산시			
151	기산동	214-1	도	450	413	국	건교부			
152	기산동	214	전	390	127	김한식	온양시 기산동 218			
153	기산동	210-4	도	8,486	1,639	공	아산시			
154	기산동	213-1	대	4,326	34	신기훈	아산시 문화로 353 103동1102(모종동 아산모종푸르지오)	아산축산업협 동조합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155	기산동	203-6	답	51	51	국	건교부			
156	기산동	203-5	답	352	352	국	재정경제부			
157	기산동	204	답	4,919	590	김영자외1	서울 강서구 화곡동 861-36			
158	기산동	204-1	도	767	652	국	건교부			
159	기산동	205	답	1,194	73	김한식	아산군 온양읍 기산리 218			
160	기산동	206	답	1,629	131	김한식	온양시 기산동 218			
161	기산동	207-1	도	393	306	국	건교부			
162	기산동	373-1	도	139	107	국	건교부			
163	기산동	373-3	도	3,244	6	국	건설부			
164	기산동	368-2	구	667	9	국	농림부			
165	기산동	215-3	도	1,120	703	공	아산시			
166	기산동	215	답	500	37	원두희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29, 303동 204호(두정동, 세광엔리치빌)	천안농업협동 조합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59-1	근저당
167	기산동	215-1	전	1,898	62	원두희 외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29,303동204호(두정 동,세광엔리치빌)	천안농업협동 조합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59-1	근저당
168	기산동	210-7	도	820	820	공	아산시			
169	기산동	216-1	읍	12,259	441	원두희 외 1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29, 303동204호(두정동 세광엔리치빌)	천안농업협동 조합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59-1	근저당
170	기산동	215-2	전	4,133	194	원두희 외1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29, (두정동, 세광엔리치빌)	천안농업협동 조합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59-1	근저당

□ 붙임 2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황산리	27-2	전	수목	배나무, 사과나무	680	주			토지소유 한인수 (황 산 129)
				수목	뽕나무, 꽃사과	10	주			
2	황산리	30-5	목	차양	합석8*6	48	m ²	김대경	황산리 30-5	
				건사	합석, 철재4.4*11	44	m ²			
				건사	합석, 철재3.2*6.6	21	m ²			
				건사	합석, 철재3*10	30	m ²			
				건사	합석, 철재5.5*9	50	m ²			
				개		10	마리			
				담장	합석	40	M			
				관정		1	식			
3	기산동	200-1 3	답	소나무		2	주	신용원	기산동 200-7	
				소나무묘목		12	주			
				매실나무		4	주			
				단풍나무		1	주			
				사철나무		2	주			
				대추나무		2	주			
				포도나무		7	주			
				무궁화		1	주			
				모과나무		2	주			
				라일락		1	주			
				수국		1	주			
				호랑가시		1	주			
				온나무		2	주			
				가시오가피		10	주			
				두릅나무		100	주			
				감나무		1	주			
				벗나무		3	주			
				자두나무		3	주			
				양앵두		1	주			

				능금나무		2	주			
				산초나무		1	주			
				느티나무		1	주			
				살구나무		1	주			
				팽나무		1	주			
				골단추나무		1	주			
				맹자나무		1	주			
				카이스카향나무 (향나무과)		4	주			
				개나리		3	주			
				배나무		1	주			
4	황산리	47	창	창고	합석,조립식9.4*12.8	120.3	m ²	진기장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2 동명아파트 201/601	
				창고	합석,조립식9*18	162	m ²			
				창고	합석,조립식9*5	45	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8*9	72	m ²			
				차양	합석(4.2*18)+(7*2)	89.6	m ²			
5	창암리	35-7	답	창고	조립식4*3 (1층)	12	m ²			토지소유 함준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1
				창고	콘테이너6*3 (2층)	18	m ²			
				창고	합석,조립식2.5*3	7.5	m ²			
				차양	합석1.2*3	3.6	m ²			

아산시 고시 제2014-258호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 같은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하 천 명	곡교천	하천의 종류	지방하천
하 천 의 위 치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40번지외 3필지 (784-1,743-3,745-23번지)		
점 용 면 적	542㎡(영구), 1,011㎡(일시)		
점 용 목 적	아산DC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인입관로 매설		
설 치 공 작 물	공업용수 인입관로(φ1,200mm) L=318m, 이토밸브실 1개소		
점 용 기 간	2014. 10. 07. ~ 2018. 12. 31.		
점용자	주 소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성 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 박동건	

2014. 10. 07.

아 산 시 장

아산시 고시 제2014-260호

도로명주소(부여)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10. 8.

아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36외 54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540-2788,277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10.08.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부여)조사

(2014.10.08)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40-3, 130-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읍금로 36	20141008	신축 20090710	지역명칭통합	
2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241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293번길 62-47 (기산동)	20141008	신축 20091125	신정호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신정로의 시작점으로부터 2,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305-1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길 8	20141008	신축 20091125	신남리 남창을 연결하는 마을 도로구간으로 법정리(신남)명을 이용하여 신남길로 명명	
4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81-27, 289-7, 81-38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671번길 5-29	20141008	신축 20091125	온천동에서 아산만을 연결하는 국도 39호 도로구간으로 아산의 중심도로서 명명한 아산로의 시작점으로부터 6,7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731-15, 731-23, 731-22, 731-2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291	20141008	신축 20091125	영인성내리에서 둔포송유리를 연결하는 군도19호 도로구간으로 윤보선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하고 있어 윤보선로로 명명	
6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15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496번길 12	20141008	신축 20091125	아산호의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아산호로의 시작점으로부터 4,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474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18-1 (온천동)	20141008	신축 20091125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구간으로 명명한 시민로의 시작점으로부터 4,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01-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73	20141008	신축 20091125	덕지리에서 산동리를 경유 천안을 연결하는 지방도 624호 구간으로 법정리(산동)명을 이용하여 산동로로 명명(충남도 관리도로)	
9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338-16	20141008	신축 200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1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32-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183-10	20141008	신축 20091125	공수리에서 갈산리를 연결하는군도13호 도로구간으로 갈산교 지명을 이용 갈산교로로 명명	
11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94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52	20141008	신축 20091125	백암리에서 송곡리를 경유 석정리를 연결하는 군도 6호 구간으로 법정리(송곡)명을 이용하여 송곡길로 명명	
12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361-171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27 (모종동)	20141008	신축 20091125	방축동사거리에서 모종동을 연결하는 시내외곽도로 구간으로 시청, 청소년교육문화회관등의 위치한 도로구간으로 문화로로 명명	
13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353-34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762-6	20141008	신축 20091125	인주밀두리에서 영인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628호 도로구간으로 인근에 영인산이 위치하고 있어 영인산의 지명을 이용하여 영인산로로 명명	
14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147-2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412-17 (기산동)	20141008	신축 200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1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227-7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279-70	20141008	신축 20091125	용봉삼거리에서 천안백서동을 연결하는 지방도628호 도로구간으로 법정구역(음봉)명을 이용하여 음봉로로 명명(충남도 관리도로)	
16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55-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142 (정리박물관)	20141008	신축 20091125	휴대리에서 천안관리리를 연결하는 면도102호 도로구간으로 법정리(휴대)명을 이용하여 휴대길로 명명	
17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상양리 32-6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대로 439-17	20141008	신축 20091125	염치염서리에서 현대자동차를 경유 인주밀두리를 연결하는 지방도64호,군도22호 도로구간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업명칭을 이용하여 현대로로 명명	
1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336-7	20141008	신축 200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19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서포리 236-2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서포길38번길 73-12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리(백서포)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백서포로의 시작점으로부터 351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336-5	20141008	신축 200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21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127-18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53번길 8 (방축동)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동(방축)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방축로의 시작점으로부터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창유리 197-9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627-18	20141008	신축 20091125	인주공세리에서 둔포송유리를 연결하는 구 국도34호 도로구간으로 인근에 아산호 위치하고 있어 아산호의 지명을 이용하여 아산호로로 명명	
2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36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43	20141008	신축 20091125	중리에서 회룡리를 연결하는 군도 23호 도로구간으로 고유지명을 사용하여 솔치로로 명명	
24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132-6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길50번길 9-40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리(상성)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상성길의 시작점으로부터 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1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338-8	20141008	신축 200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2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34-1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338-13	20141008	신축 200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27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서포리 1118-1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438-59	20141008	신축 20091125	아산리에서 신운리를 경유 백서포리를 연결하는 리도205호 구간으로 법정구역(영인)명을 이용하여 영인로로 명명	
2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 188-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길 51-23	20141008	신축 20091125	중리3구에서 2구를 연결하는 구지방도623호 도로구간으로 법정리(중리)명을 이용하여 중리길로 명명	
29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370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26 (용화동)	20141008	신축 20091125	용화구획정리지구내 용화동에서 용화고등학교를 경유 풍기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학교명을 이용하여 용화고길로 명명	
3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292-4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595번길 27-42	20141008	신축 20091125	아산시 대표 관광지인 온천의 이미지를 살려 명명한 온천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5,9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 56-2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85번길 7-1 (배미동)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동(배미)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배미로의 시작점으로부터 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50-1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48	20141008	신축 20091125	선장군덕리에서 선창읍내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 도로구간으로 아산의 서부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방위를 활용 서부남로로 명명	
3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712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13	20141008	신축 20091125	월랑리와 산동리를 연결하는 리도201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산동리의 (산)자를 조합하여 월산로로 명명	
34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021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83번길 16-10 (용화동)	20141008	신축 20091125	(온)천동과 용(화)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법정동명을 조합하여 명명한 온화로의 시작점으로부터 8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충청남도 아산시 장춘동 90	충청남도 아산시 장춘길 134-48 (장춘동)	20141008	신축 20091125	국도39호에서 장춘동 마을을 경유 지방도623호를 연결하는 마을 도로구간으로 법정동(장춘)명을 이용하여 장춘길로 명명	
36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30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길14번길 5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리(역촌)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역촌길의 시작점으로부터 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80-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동길 76-3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리(신남)명을 이용하여 신남리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도로로서 신남동길로 명명	
38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3-15, 196-9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65	20141008	신축 20091125	백암리에서 송곡리를 경유 석정리를 연결하는 군도 6호 구간으로 법정리(송곡)명을 이용하여 송곡길로 명명	
39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294-9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남길27번길 3-1	20141008	신축 20091125	법정리(신운)명을 이용하고 신운리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로서 명명한 신운남길의 시작점으로부터 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55-7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205-16	20141008	신축 20091125	공수리에서 갈산리를 연결하는군도13호 도로구간으로 갈산교 지명을 이용 갈산교로로 명명	
4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55-2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205-14	20141008	신축 20091125	공수리에서 갈산리를 연결하는군도13호 도로구간으로 갈산교 지명을 이용 갈산교로로 명명	
4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301-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394	20141008	신축 20091126	수철리에서 좌부동을 연결하는 지방도623호 구간으로 조선 초의 문인이며, 아산 출신인 청림 고불 맹사성선생의 호를 이용하여 고불로로 명명(충남도 관리도로)	
43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512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12번길 16-8 (용화동)	20141008	신축 20110325	법정동(용화)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용화로의 시작점으로부터 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04-2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33번길 35	20141008	신축 20110325	법정리(매곡)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매곡로 시작점으로부터 330m 지점에서 좌측으로 분기된 도로임	
45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569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12번길 15-5 (용화동)	20141008	신축 20110325	법정동(용화)명을 이용하여 명명한 용화로의 시작점으로부터 1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아산시 고시 제2014-261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1. 아산시 용화동 94-2번지 일원 용화제2근린공원내 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하였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7), 산림녹지과(☎041-540-29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나.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축척 1/1,200) : 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대상지 현황

가. 공 원 명 : 용화 제2근린공원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92-4번지

다. 지역 · 지구 : 아산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라. 주 용 도 : 근린공원

마. 최초고시일 : 2005. 10. 31. (충청남도 고시 제2005-191호)

2. 공원조성계획(변경) 사유서

- 개발계획 조서와 도면과의 근린공원 면적 오차
- 기 조성현황과 공원조성계획과 상이한 부분 조정
- 용화 제2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된 우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고, 휴양시설(경로당)의 설치를 통한 지역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활용

3. 총괄표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계	10,338	10,307.5	
시설면적	3,512.9	3,455.7	33.6%
녹지면적	6,825.1	6,851.8	66.4%

4. 건축물결정(변경)표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공원면적(m ²)	10,338	10,307.5	
건축면적(m ²)	-	109.2	
연 면 적(m ²)	-	109.2	
건 폐 율(%)	-	1.1	법 : 20%이하

5. 세부시설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512.9	3,455.7	3,512.9	3,455.7	-	-	-	-	감 57.2㎡
기반시설	1,641.5	1,584.3	1,641.5	1,584.3	-	-	-	-	감 57.2㎡
도로	1,120.9	1,120.9	1,120.9	1,120.9	-	-	-	-	감 3.5㎡
광 장	520.6	1,117.4	520.6	1,117.4	-	-	-	-	감 53.7㎡
조경시설	-	-	-	-	-	-	-	-	-
운동시설	692.1	273.6	692.1	273.6	-	-	-	-	감 418.5㎡
휴양시설	-	418.5	-	418.5	-	109.2	-	109.2	증 418.5㎡
교양시설	1,179.3	1,179.3	1,179.3	1,179.3	-	-	-	-	-
편익시설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녹지 및 기타	6,825.1	6,851.8	6,825.1	6,851.8	-	-	-	-	녹지율 : 66.4% 증 26.7㎡

6.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기)	건축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512.9	3,455.7	3,512.9	3,455.7				
기반 시설	소 계		1,641.5	1,584.3	1,641.5	1,584.3			감57.2㎡	
	가	-1 광장 1	346.3	307.1	346.3	307.1			감39.2㎡	
		-2 광장 2	119.0	119.0	119.0	119.0				
		-3 광장 3	55.3	40.8	55.3	40.8			감14.5㎡	
	도로		1120.9	1,117.4	1120.9	1,117.4			감3.5㎡	
조경 시설	소 계		-	-	-	-				
		①	막구조파고라	-	-	-	-	1		
		②	사각파고라	-	-	-	-	2		
		③	정자	-	-	-	-	1		
		④	연식의자	-	-	-	-	8	L=44.18m	
		⑤	사각의자	-	-	-	-	7		
	⑥	평의자	-	-	-	-	26	파고라하부 12개소		
운동 시설	소 계		692.1	273.6	692.1	273.6			감418.5㎡	
	나		다목적운동장	449.7	273.6	449.7	273.6			감176.1㎡
			농구장	242.4	-	242.4	-			감242.4㎡
			⑦	폴웨이트	-	-	-	-	1	
			⑧	스텝싸이클	-	-	-	-	1	
			⑨	크로스컨트리	-	-	-	-	1	
			⑩	롤링웨이스트	-	-	-	-	1	
	⑪	레그프레스	-	-	-	-	2			
휴양 시설	소 계		-	418.5	-	418.5			감418.5㎡	
	다		경로당	-	236.4	-	236.4		109.2	감176.1㎡
			휴게쉼터	-	125.1	-	125.1			감242.4㎡
	마	지압장	-	57.0	-	57.0				
교양 시설	소 계		1,179.3	1,179.3	1,179.3	1,179.3				
	바		야외공연장	1,179.3	1,179.3	1,179.3	1,179.3			
		⑫	스탠드					1		
편익 시설	소 계		-	-	-	-				
		⑬	전망데크	-	-	-	-	1		
관리 시설	소 계		-	-	-	-				
		⑭	종합안내판	-	-	-	-	2		
		⑮	휴지통	-	-	-	-	10		
	⑯	공원등	-	-	-	-	15			
녹지 및 기타	소 계		6,825.1	6,851.8	6,825.1	6,851.8			증26.7㎡	
			녹지	6,825.1	6,851.8	6,825.1	6,851.8			증26.7㎡
합계	제2근린공원		10,338	10,307.5	10,338	10,307.5		109.2	녹지율 66.4%	

※ 법적시설률 40%이하 : $(3,455.7\text{㎡} / 10,307.5\text{㎡}) \times 100\% = 33.6\%$

7. 도로 결정조서

가. 도로 총괄표

구 분	연장(m)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420.8	419.0	1,120.9	1,117.4	-
소로2류	64.5	64.5	515.9	515.9	
소로3류	356.3	354.5	605.0	608.5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면적(m ²)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소로	2	1	8.0	연결로	18.2	18.2	145.5	145.5	광장1가-1	야외 공연장	
기정	소로	2	2	8.0	연결로	46.3	46.3	370.4	370.4	광장2가-2	야외 공연장	
변경	소로	3	1	2.0	진입로	5.3	3.5	12.6	9.1	보도	소로3-9	
기정	소로	3	2	2.0	연결로	6.9	6.9	13.8	13.8	소로3-9	스탠드	
기정	소로	3	3	2.0	연결로	26.5	26.5	53.0	53.0	광장3가-3	소로3-9	
기정	소로	3	4	2.0	연결로	11.5	11.5	23.0	23.0	소로3-9	스탠드	
기정	소로	3	5	2.0	진입로	25.2	25.2	51.5	51.5	보도	소로3-9	
기정	소로	3	6	2.0	연결로	17.3	17.3	34.5	34.5	광장2가-2	경로당	
기정	소로	3	7	2.0	진입로	3.3	3.3	8.1	8.1	보도	소로3-10	
기정	소로	3	8	2.0	진입로	3.7	3.7	8.5	8.5	보도	소로3-10	
기정	소로	3	9	2.0	연결로	118.4	118.4	186.7	186.7	광장1가-1	소로2-2	
기정	소로	3	10	2.0	연결로	138.2	138.2	213.3	213.3	광장1가-1	소로2-2	

아산시 공고 제2014-1409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1.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56-1번지 일원에 영인산 휴양림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5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 2) 명 칭 : 영인산 운송수단 도입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궤도 A=9,270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아산시장
- 2)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5년 2월 28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사. 열람기간 : 2014. 10. 10. ~ 2014. 10. 30.(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	아산리	50-1	임	32,118	122	손용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95-1			
2	아산리	50-2	임	16,615	1,498	아산시				
3	아산리	52-1	임	4,844	342	아산시				
4	아산리	53	전	2,010	200	아산시				
5	아산리	53-2	전	84	3	아산시				
6	아산리	53-3	전	10	9	아산시				
7	아산리	54	임	21	7	아산시				
8	아산리	54-2	임	1,578	15	아산시				
9	아산리	55	임	60	34	아산시				
10	아산리	55-1	임	714	17	아산시				
11	아산리	57-2	전	39	16	아산시				
12	아산리	61	전	139	96	아산시				
13	아산리	61-1	전	432	258	아산시				
14	아산리	62	임	883	66	아산시				
15	아산리	67	전	616	150	아산시				
16	아산리	67-1	전	948	486	아산시				
17	아산리	68	전	1,711	33	아산시				
18	아산리	산51	임	3,338	117	아산시				
19	아산리	산53	임	598	121	아산시				
20	아산리	산54-4	임	8,649	85	아산시				
21	아산리	산55-7	임	3,522	332	김녕김 씨치중 파종중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102			
22	아산리	산55-9	임	2,159	87	아산시				
23	아산리	산56-1	임	816,496	5,176	아산시				

아산시 공고 제2014-1416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0. 8.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공포, 2015.1.1.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 지방 보조금의 선심성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있어 집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함으로써 조례 제명 변경

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기준 마련 개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 평가, 보조사업 유지 판단 등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토록 규정

○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부터 제22조)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에 의한 지원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용도의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법령 위반시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등을 규정

다.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시 법률 준용 규정 신설(안 제23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www.asan.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아산시청(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주 소: (우) 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 전 화: (041)540-2215

■ 팩 스: (041)540-2319

붙임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아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아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매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결과를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함께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

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성과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32조의8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4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1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아산시 노인일자리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5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아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아산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2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3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4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5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6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7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8

-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9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10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8.)(개정 2014.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8.18.)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8.18.)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8.1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8.18.)

1.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4.8.18.)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개정 2014.8.18.)
 4. 자가자본 부담액
 5. 보조 사업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4.8.18.)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4.8.18.)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개정 2014.8.18.)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4.8.18.)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8.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좌를 따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카드(법인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사용내역서 원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중물 그리고 각종 동산 및 시장이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장부를 비치하고, 자산증감내역을 명백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14.8.18.)

- ②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8.18.)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8.18.)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개정 2014.8.18.)
 2. 삭제(1999.8.10.)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4.8.18.)

③ 삭제(2014. 8. 18.)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조건 및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8.18.)

제11조의2(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지역의 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6.)(개정 2014.8.18.)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9.25.)(개정 2014.8.18.)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18.)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개정 2014.8.18.)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개정 2014.8.18.)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개정 2014.8.18.)

제14조의2(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신설 2012.3.9)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유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아산시 민간 보조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8.18.)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4.8.18.)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1. 삭제(2014.8.18.)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8.18.)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삭제(1999.8.10.)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아산시 공고 제2014-1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임용상 외 823건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 처분사전통지서, 부과 ,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 10. 10. ~ 2014. 10. 25.(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독촉부과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 되어 반송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귀하(사)의 차량이 붙임과 같이 미(지연)가입 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의무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 하였거나 붙임 내역이 상이할 경우 또는 미가입자께서는 즉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담당(☎ 041-540-2361, 536-8512 FAX : 041-540- 236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범위내 감경되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10. 10.

아 산 시 장

납부자명	기본주소		등기번호
(주)디케이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1	82주544*	1091894105835
(주)송광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43번길	충남86가491*	1091894108860
(주)제이에코텍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교길126번길	92라536*	1091894105840
D.H.W.NISHANTHA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38번길	34머275*	1091894105813
GAINULIN SERGEY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54거127*	1091894106730
GREGORIO RENATO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333번길	52수952*	1091894108821
HERATH MUDIYANSELAGE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38번길	63부125*	1091894105829
MIRKAMILOV MUZAFFAR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9부802*	1091894105832
NIE YUAN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842번길	69다302*	1091894106741
RENTSENMYADAG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63도244*	1091894106736
SAWADA TOMOYO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109번길	77소608*	1091894108830
SURATHAWON BUNTHIDA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의길	09부621*	1091894106700
바이전장(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94라502*	1091894108838
프라임산업개발(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94마288*	1091894108844
현창건설산업(주)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1동 아산우체국	충남34거800*	1091894108854
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87더659*	1091894106749
강 * 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42러669*	1091894106722
강 * 구	충청남도 아산시 실목로	46로527*	1091894106727
곽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충남아산하756*	1091894108867
권 * 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	94마446*	1091894108845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5-8	36고486*	1091894106719
김 * 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8-3	62서723*	1091894106735
김 * 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111번길 9-9	19노642*	1091894108791
김 * 재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17	04루704*	1091894106692
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17수615*	1091894106705
김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20너919*	1091894108792
김 * 운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1399번길	95소750*	1091894105842
김 * 해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83	10로927*	1091894108787
김 * 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261	충남아산파445*	1091894106759
김 * 정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	충남42다753*	1091894106757
김 * 상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70	35저346*	1091894105815
김 * 천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5도756*	1091894105830
김 * 신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12우173*	1091894108788
김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103-17	94소560*	1091894105841
김 * 일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 15	충남06도861*	1091894108853
김 * 유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충남72가885*	1091894108856
김 * 동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55가710*	1091894106733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244번길 3-16	충남아산파448*	1091894108863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244번길 3-16	충남아산파448*	1091894108862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244번길 3-16	충남아산파448*	1091894108864
노 * 곤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30나596*	1091894108799
노 * 천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83수537*	1091894106745
노 * 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로31번길	59더609*	1091894105825
맹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31번길 14	87누697*	1091894105838
박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6	94두600*	1091894106754
박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76어519*	1091894106743
방 * 혁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65번길	37수755*	1091894106721
방 * 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29머778*	1091894105812
백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25번길	07구220*	1091894106695
서 * 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0	31두182*	1091894108801
송 * 남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38번길 5	83보826*	1091894108832
송 * 화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26서324*	1091894105811
안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22로900*	1091894105809
안 * 규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충남30가832*	1091894105843
안 * 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9-29	36저658*	1091894105817
안 * 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9-29	충남06도687*	1091894108849
양 * 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60	54나623*	1091894108822
오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2	15구483*	1091894108790

오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2	충남80가681*	1091894108858
원 * 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43조246*	1091894106725
원 * 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54	43고805*	1091894108813
유 * 경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51어502*	1091894106728
유 * 석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10	29나383*	1091894108798
유 * 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51오109*	1091894105822
윤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14	51부544*	1091894108820
이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54무351*	1091894106732
이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41	충남31누988*	1091894105844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43두365*	1091894105819
이 * 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37소568*	1091894105818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85	20마899*	1091894105808
이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04도840*	1091894106691
이 * 람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67거750*	1091894106740
이 * 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6길 16	충남06도741*	1091894108851
이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05가871*	1091894106693
이 * 민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11가241*	1091894106701
이 * 학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94머188*	1091894108846
이 * 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충남34너621*	1091894106756
이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충무로639번길	충남아산바156*	1091894108861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50번길	31고798*	1091894106715
이 * 장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97	46루392*	1091894108816
이 * 주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7버599*	1091894106720
임 * 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0-1	61도123*	1091894105826
장 * 식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26번길 13-13	93어954*	1091894106752
장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소874*	1091894108823
전 * 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03다160*	1091894105799
정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43	23두713*	1091894106710
정 * 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03부772*	1091894105801
조 * 목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안길14번길	20보216*	1091894108793
조 * 목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안길14번길	38나352*	1091894108807
차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55우505*	1091894108824
최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	09보821*	1091894106699
최 * 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94라625*	1091894108839
하 * 웅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충남아산파450*	1091894108865
한 * 정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246번길	94러413*	1091894108841
한 * 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동길 12-8	14부400*	1091894106703
허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역길 38	충남54바155*	1091894108855
황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1109번길	01루333*	1091894106688

납부자명	기본주소	물건명	등기번호
(주)성광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08라782*	1091894108988
(주)이노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43나822*	1091894106843
태화산업개발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충남31누791*	1091894109131
미래에너지기술(주)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아산로671번길	22너678*	1091894109022
삼건중공업(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05두280*	1091894105862
프라이밍산업개발(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64다664*	1091894109088
현대표준기술원(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누262*	1091894106885
DANG TU NHI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46오641*	1091894105933
ENRIQUEZ JOY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옹길	29다431*	1091894109034
GALPAYAGE DON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840번길 9-2	47가198*	1091894109066
JIN LONGDE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59부276*	1091894106864
NAMSRAI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566번길	20러702*	1091894106802
OKUMURA KOZO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71번길 19	73우675*	1091894106881
PAK ALEVTINA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14두958*	1091894109003
PYAGAY ALEXANDR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33라770*	1091894105902
SAIBNAZAROV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총무로	34구223*	1091894109042
SENG VUTHY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39더628*	1091894105916
권*규외1인(권*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05소184*	1091894106775
김*숙외1인(이*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115	77누513*	1091894109107
복*영외1인(김*철)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55도493*	1091894106861
유*규외1(장*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충남31나473*	1091894109130
한*정한*정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246번길	05머909*	1091894108982
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04수575*	1091894106773
강 * 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36부448*	1091894109047
강 * 규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28조200*	1091894109033
곽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충남예산라273*	1091894106008
곽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충남아산하768*	1091894106007
구 * 인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65고324*	1091894106870
권 * 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31나757*	1091894106819
김 * 임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10라766*	1091894108991
김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길13번길	03소824*	1091894105859
김 * 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83더407*	1091894105967
김 * 덕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63번길	54주118*	1091894106858
김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1	64누380*	1091894106867
김 * 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97	13더173*	1091894109000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842번길	43주124*	1091894109064
김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54거227*	1091894109076
김 * 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97	43고805*	1091894109058
김 * 준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06나394*	1091894108983
김 * 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43두390*	1091894106844
김 * 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54번길	37나147*	1091894109048
김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19수321*	1091894106800
김 * 경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233번길	54고868*	1091894106856
김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66누684*	1091894105959
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17수615*	1091894109011
김 * 운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1399번길	95소750*	1091894106904
김 * 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4-31	35버573*	1091894105911
김 * 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73저610*	1091894106882
김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53	충남80자667*	1091894109141
김 * 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총무로	20주346*	1091894105883
김 * 지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602	19너794*	1091894105879
김 * 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총무로	26오507*	1091894106813
김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65고375*	1091894109089
김 * 민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55다211*	1091894106860
김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20	67거504*	1091894106874
김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장로	01라528*	1091894106767
김 * 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68-8	충남80가683*	1091894106918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 183 - 39마621*	1091894105917

김 * 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94라958*	1091894106900
김 * 훈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충남아산파444*	1091894106929
김 * 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10로361*	1091894106787
김 * 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26주176*	1091894105893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20	충남83배104*	1091894105999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20	충남83배104*	1091894106924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14	24수341*	1091894109029
김 * 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저수지길	56도920*	1091894105953
김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191번길	12저283*	1091894106790
남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111번길	06루609*	1091894105864
노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10주712*	1091894108994
노 *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6	54가296*	1091894109074
노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충남아산파349*	1091894109147
박 * 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213번길	충남아산파393*	1091894106928
박 * 화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48	53무294*	1091894105944
박 * 규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충남06도511*	1091894106907
박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96번길 9	54마723*	1091894105947
박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14	77누433*	1091894106886
박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총무로20번길	09버271*	1091894106783
박 * 이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17	42무309*	1091894105925
박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11	70도411*	1091894106878
박 * 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02소721*	1091894106768
박 * 신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29번길 10-4	70버334*	1091894106879
박 * 식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길	84어913*	1091894105969
방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58	25로805*	1091894106810
배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7-8	38어302*	1091894106838
배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7-8	46서583*	1091894105932
백 * 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52누859*	1091894109071
복 * 슬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41번길 4-8	43거704*	1091894105926
서 * 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16	60수901*	1091894109083
서 * 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261	52너940*	1091894105942
서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7	94러139*	1091894105978
서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7	94러139*	1091894106901
석 * 국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96번길 7-4	40고814*	1091894105920
손 * 남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69마107*	1091894109096
손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25무189*	1091894106811
손 * 웅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2	69우574*	1091894109100
송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36노539*	1091894106829
송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총무로72번길	31나371*	1091894105896
송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충남43라474*	1091894109137
심 * 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14마434*	1091894105870
심 * 민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43노965*	1091894109060
안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31수347*	1091894105899
안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103-17	34주719*	1091894105908
안 * 봉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24도702*	1091894105889
양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89러191*	1091894106892
임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03-10	09조362*	1091894108990
여 * 미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9	63고778*	1091894105956
여 * 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69번길	21다421*	1091894109019
오 * 섭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595번길	11라862*	1091894106789
오 * 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23	32가845*	1091894109039
오 * 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19수363*	1091894105880
우 * 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02러729*	1091894105857
유 * 숙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24	충남34거829*	1091894105989
유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18	충남30너517*	1091894106910
유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20마847*	1091894109015
유 * 예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566-12	66더704*	1091894109091
유 * 예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566-12	37부702*	1091894109051
윤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16-8	25조107*	1091894109031

윤 * 민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11라786*	1091894106788
윤 * 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10구373*	1091894106785
윤 * 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80번길	07누159*	1091894108985
이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06도327*	1091894106776
이 * 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18버649*	1091894105876
이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4거176*	1091894109123
이 * 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28-1	32우416*	1091894105901
이 * 석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02누132*	1091894108973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8번길 7-15	53두408*	1091894106853
이 * 실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18너952*	1091894106797
이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65번길 24-1	54주270*	1091894105949
이 * 윤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65버593*	1091894105958
이 * 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21	11라836*	1091894108996
이 * 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21	57서698*	1091894109081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29번길	29소875*	1091894106815
이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31수379*	1091894106820
이 * 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98	75버568*	1091894105962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43두365*	1091894109063
이 * 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37소568*	1091894106832
이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7	23로418*	1091894106808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18주107*	1091894105878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85	20마899*	1091894109016
이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26번길	68모662*	1091894109094
이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26번길	26거292*	1091894109032
이 * 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01수945*	1091894108970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07무236*	1091894106781
이 * 송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90	13소142*	1091894105869
이 * 창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4거905*	1091894105906
이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55번길 10	29조136*	1091894106817
이 * 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33모903*	1091894106822
이 *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8	94라789*	1091894109124
이 * 길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60러984*	1091894106865
이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09누543*	1091894105867
이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41도469*	1091894105921
이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23누211*	1091894109024
이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51오193*	1091894106852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6머406*	1091894106795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충남아산파419*	1091894106003
이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77-8	충남34더348*	1091894105991
이 * 북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29오127*	1091894109035
이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602	충남34거228*	1091894106914
이 * 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길	16저681*	1091894109009
임 * 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0-1	61도123*	1091894109084
임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40	17부869*	1091894109010
임 *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안길	충남34너913*	1091894109136
임 * 남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125번길	94머222*	1091894109126
장 * 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10	80노662*	1091894109109
장 * 설	충청남도 아산시 신리길	충남34다723*	1091894105990
장 * 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37머945*	1091894109050
장 * 주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63-13	47우982*	1091894105936
장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북길	24머882*	1091894109028
장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9	08라765*	1091894105866
장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서길	90다142*	1091894106894
전 * 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	87우195*	1091894109115
전 * 정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북길	충남31구126*	1091894106912
전 * 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10	54저718*	1091894105948
전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51어338*	1091894105940
전 * 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24번길	12서693*	1091894108998
정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03다160*	1091894105858

정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83번길	64노427*	1091894106866
정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15너967*	1091894109006
정 * 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54	54가635*	1091894106854
정 * 식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길	25마424*	1091894109030
정 * 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58	34루929*	1091894105907
정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60	20라729*	1091894109014
정 * 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5-18	03부772*	1091894108978
정 * 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04누418*	1091894108979
정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24	14두270*	1091894109002
정 * 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1길	90노150*	1091894105973
조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90저383*	1091894106896
조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서길	10다171*	1091894106786
조 * 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58	76어269*	1091894106884
조 * 숙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16	45우623*	1091894105929
조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87번길	52거658*	1091894105941
조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23로407*	1091894106807
주 * 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42루455*	1091894105924
진 * 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7	충남82가349*	1091894105994
진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94나832*	1091894105977
진 * 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6	08구487*	1091894108987
차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충남아산파843*	1091894106933
채 * 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53	35오968*	1091894106828
최 * 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60어699*	1091894105955
최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315번길	10주764*	1091894108995
최 * 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74조900*	1091894109103
최 * 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74조900*	1091894109103
최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77-3	90루792*	1091894106895
최 * 옥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40버578*	1091894106841
최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88마859*	1091894109116
최 * 영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667	62조263*	1091894109086
최 * 주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16서217*	1091894109007
최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82번길	77수951*	1091894105965
최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69	충남아산하769*	1091894109154
최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69	충남아산하769*	1091894109153
최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	충남34거282*	1091894109134
추 * 갑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20-14	59더613*	1091894109082
편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30-4	54주221*	1091894106859
한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09모636*	1091894105868
한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40로814*	1091894106839
한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53	51무197*	1091894105939
한 *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30러129*	1091894109036
한 * 구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42노612*	1091894105923
허 * 무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139	20보477*	1091894109017
허 * 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43머467*	1091894105928
허 * 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01고775*	1091894105856

납부자명	기본주소	물건명	등기번호
(주)디케이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1	82주544*	1091894106189
(주)아산통운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94번길 4	54라643*	1091894106079
(주)아산통운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94번길 4	94머374*	1091894106212
(주)케이에프피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북로	충남72가868*	1091894106199
(주)헤인종합개발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9우755*	1091894106099
정우약품공업(주)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충남34거637*	1091894106309
천지종합건설(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길2번길 77-6	59더133*	1091894106130
고*동외1인(고*국)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93번길	77누388*	1091894106402
문*민(멕시코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77-1	충남아산파921*	1091894106294
채*영.홍*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57번길	95라903*	1091894106194
GUNGAASUREN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09고195*	1091894106300
JOBIROV SAIDAKBAR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충남86고544*	1091894106091
KIM OLEG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	61두432*	1091894106327
LKHAGVASUREN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61더729*	1091894106209
MAHKAMOV RUSTAM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교길126번길	42고161*	1091894106086
PIRNAFASOV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862	28저418*	1091894106155
Qu Min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09로649*	1091894106357
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87더659*	1091894106226
강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83수529*	1091894106211
강 * 식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조346*	1091894106316
고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52	30소484*	1091894106158
구 * 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8길	충남06도501*	1091894106297
김 * 모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8번길	20라781*	1091894106146
김 * 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1	19어426*	1091894106253
김 * 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1	73서776*	1091894106278
김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61누811*	1091894106180
김 * 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42고134*	1091894106264
김 * 식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100-3	94거380*	1091894106224
김 * 종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29번길 6-6	94소109*	1091894106193
김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54거227*	1091894106338
김 * 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67라628*	1091894106183
김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415번길	24어143*	1091894106257
김 * 정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7번길	66다675*	1091894106396
김 * 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5보955*	1091894106151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25너173*	1091894106150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25너173*	1091894106258
김 * 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호로1032번길	충남34거219*	1091894106121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34	75부754*	1091894106279
김 * 상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70	35저346*	1091894106114
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50-20	77소845*	1091894106280
김 * 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충남80라951*	1091894106100
김 * 숙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8	04머607*	1091894106135
김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03너866*	1091894106314
김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31보980*	1091894106208
김 * 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02러551*	1091894106348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20라732*	1091894106361
김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22두390*	1091894106334
김 * 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6	09모166*	1091894106248
김 * 훈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57번길 20-1	16모581*	1091894106143
김 * 성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59노755*	1091894106274
김 * 주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47	충남98사420*	1091894106202
김 *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292번길	19라382*	1091894106111
김 * 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24-	10소991*	1091894106301
김 * 용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53	61노355*	1091894106394
남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76번길	20두269*	1091894106254
남 * 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4-1	59노467*	1091894106176
노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70번길 6-1	94머171*	1091894106241
노 * 실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5	08버470*	1091894106333

동 * 준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566-12	80두662*	1091894106210
맹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31번길 14	87누697*	1091894106131
문 *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08소526*	1091894106299
박 * 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서로 70-29	50구773*	1091894106169
박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65번길	14마899*	1091894106141
박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1182번길	30보247*	1091894106156
박 * 일	충청남도 당진시 돌비로	54가835*	1091894106128
박 * 규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96번길	충남70나631*	1091894106326
박 * 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56거859*	1091894106097
박 * 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44	충남35나827*	1091894106197
박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16-8	04소189*	1091894106077
박 * 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42소927*	1091894106165
박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01거313*	1091894106298
박 * 봉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40로230*	1091894106378
반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16-8	04누948*	1091894106315
배 * 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	충남72가594*	1091894106213
배 * 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23-3	37거210*	1091894106377
배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7-8	46서583*	1091894106267
백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48	53머704*	1091894106386
백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339-1	13누233*	1091894106251
서 * 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0	31두182*	1091894106159
서 * 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0	08구520*	1091894106228
손 * 남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69마107*	1091894106400
송 * 석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125-1	충남34거297*	1091894106083
송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1	18구492*	1091894106233
송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36노539*	1091894106235
송 * 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37주706*	1091894106324
승 * 연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33번길 16	02저277*	1091894106232
신 * 일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52가802*	1091894106170
신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동정길	73구494*	1091894106276
신 * 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서로 48-40	57러512*	1091894106174
안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22로900*	1091894106147
안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03노414*	1091894106246
안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충남82나809*	1091894106109
안 * 성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97조652*	1091894106289
양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성내길	84두205*	1091894106321
여 * 한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83-20	43두360*	1091894106331
오 * 선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04오404*	1091894106124
우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94러177*	1091894106406
유 * 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길	15노890*	1091894106142
유 * 한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29번길	충남아산파378*	1091894106207
유 * 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56더410*	1091894106390
윤 * 상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117번길 17	충남아산파268*	1091894106419
이 * 필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61너437*	1091894106088
이 * 애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887-15	89오912*	1091894106081
이 * 주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68두416*	1091894106184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09누778*	1091894106125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54조838*	1091894106115
이 * 우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94다967*	1091894106190
이 * 복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5	04도820*	1091894106349
이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16번길	충남아산파874*	1091894106205
이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16번길	충남아산파874*	1091894106206
이 * 녀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25노621*	1091894106367
이 * 연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81	63고754*	1091894106116
이 * 배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37수789*	1091894106263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5-5	충남30라997*	1091894106093
이 * 세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8번길 11	충남80라860*	1091894106092
이 * 세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8번길 11	충남82나947*	1091894106312
이 * 곤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18	86우480*	1091894106404

이 * 천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100-11	59더616*	1091894106391
이 * 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50-13	47조819*	1091894106268
이 * 록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350번길	80로182*	1091894106188
이 * 해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98	46주857*	1091894106382
이 * 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영작리	94더265*	1091894106287
이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34수732*	1091894106375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79번길	57너307*	1091894106219
이 * 영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25길	충남34나846*	1091894106295
인 * 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54라680*	1091894106237
인 * 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1	93두687*	1091894106082
임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로147번길	55무732*	1091894106269
임 * 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10-6	89무335*	1091894106284
장 * 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6	33모976*	1091894106078
장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652-78	20어363*	1091894106230
장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삼교천로	56버603*	1091894106270
장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충무로308번길 24	31모263*	1091894106112
장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충무로308번길 24	33러989*	1091894106113
장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78나746*	1091894106231
전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25	27너251*	1091894106153
정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09번길 3	충남83배100*	1091894106293
정 * 분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4수922*	1091894106075
정 * 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623번길	59구190*	1091894106175
정 * 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충남31러297*	1091894106308
정 * 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5-18	03부772*	1091894106110
조 * 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2226번길	충남80라262*	1091894106416
조 * 구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69두547*	1091894106275
주 * 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42루455*	1091894106163
진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7누370*	1091894106089
차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98	27주842*	1091894106234
천 * 필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석정길 60-8	24루660*	1091894106366
최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07더245*	1091894106351
최 * 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98	17로647*	1091894106095
최 * 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284번길 26	10머872*	1091894106094
최 * 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나길 79-1	13버897*	1091894106222
최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315번길	충남30마300*	1091894106291
최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315번길	94러341*	1091894106307
최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28서145*	1091894106317
최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111번길 10-4	59마918*	1091894106178
최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339-1	94머325*	1091894106120
최 * 목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8번길 4-16	충남아산파479*	1091894106204
최 * 름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16	77누538*	1091894106244
최 * 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4	55가208*	1091894106387
최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29고371*	1091894106372
최 * 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	73부583*	1091894106277
최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12번길 12-3	27보632*	1091894106154
최 * 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56마507*	1091894106173
최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08더164*	1091894106353
최 * 만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40	35러780*	1091894106376
한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68고795*	1091894106340
한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17	94다312*	1091894106306
한 * 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3	56모380*	1091894106304
한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103-17	충남02로757*	1091894106414
홍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로147번길	53조491*	1091894106171
홍 * 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329번길	충남아산파409*	1091894106229
황 *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충남54바158*	1091894106311
황 * 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58	충남30나868*	1091894106415

납부자명	기본주소	물건명	등기번호
(주)대호에스엔시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모원리	39모400*	1091894108149
(주)드림팀로지스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27번길 19	충남83바731*	1091894108177
(주)성광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9	08라782*	1091894108212
(주)아산로지스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94번길 4	충남83바812*	1091894108187
(주)온양렉카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99두675*	1091894105357
(주)온양렉카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99두678*	1091894106528
(주)이레무역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56거161*	1091894106423
(주)인산이앤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충남82가404*	1091894106502
(주)한스푸드시스템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63누694*	1091894106428
배방산업개발(주)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40번길 21	54가255*	1091894105457
삼건중공업(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05두280*	1091894109391
황금뜰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안길	94러978*	1091894105326
DANG TU NHI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46오641*	1091894109424
EGAMBERDIEV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1어412*	1091894108175
HERATH MUDIYANSELAGE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202번길	67로130*	1091894106524
HITTAGAHAMULA WATTE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	32다673*	1091894105390
KHVAN ALEXANDER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2서557*	1091894105421
LEE PAEK Y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217	26누973*	1091894106440
NGUYEN VAN TUNG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35오121*	1091894106507
OKAFORJOHNBOSCO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93가670*	1091894105347
SENG VUTHY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39더628*	1091894109462
TURAEVBURGUTBEK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안길	42로743*	1091894106519
XIAN FENJI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7번길 2-14	20라212*	1091894106439
ZHANG CHUNGUANG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월선길	68두255*	1091894108251
김명숙외1인(강태윤)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55	33도460*	1091894105391
김용태외1(송선주)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25로845*	1091894108224
박영철외1인(오금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길30번길	62어408*	1091894105400
이미영,차승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해위길52번길	37더570*	1091894106518
이향옥외1인(송제욱)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24	59수917*	1091894108176
이호순외1인(안기훈)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2	04도848*	1091894105339
강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남길	충남42가991*	1091894105377
고 * 주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47	67나276*	1091894105350
공 * 혜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4번길 69	충남아산파289*	1091894108188
공 * 행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29번길 76-8	52고764*	1091894105455
곽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충남예산라273*	1091894109418
곽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충남아산하768*	1091894109506
곽 * 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13수835*	1091894106462
구 * 덕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94다302*	1091894106512
권 * 준	대전광역시 서구 변정6길	충남83노288*	1091894106513
권 * 석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6번길	43두318*	1091894106480
권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14	22가210*	1091894106506
김 * 은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05조727*	1091894108160
김 * 모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8번길	77누466*	1091894105351
김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신인길13번길	03소824*	1091894109441
김 * 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8-3	62서723*	1091894105462
김 * 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28-3	83더407*	1091894109413
김 * 연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16	10모149*	1091894105416
김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77조153*	1091894106441
김 *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 183	54오809*	1091894106522
김 * 복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17번길	33서472*	1091894106472
김 * 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02더368*	1091894105407
김 * 향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308번길 24	32너495*	1091894106471
김 * 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충남천안사936*	1091894108190
김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66누684*	1091894109487
김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862	88보154*	1091894108166
김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17-6	43두321*	1091894108197
김 * 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70노700*	1091894108154
김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490-	27주575*	1091894105436

김 * 은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충남34더274*	1091894105483
김 * 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4-31	35버573*	1091894109435
김 * 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충남아산파995*	1091894105380
김 * 철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12	충남아산하764*	1091894105406
김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54라745*	1091894105458
김 * 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36	28마773*	1091894108174
김 * 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03-10	61고714*	1091894108139
김 * 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15부706*	1091894106516
김 * 지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602	19너794*	1091894108220
김 * 지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602	19너794*	1091894109448
김 * 상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70	35저346*	1091894105444
김 * 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287	03너890*	1091894106456
김 * 속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길	17소773*	1091894108218
김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86보181*	1091894108157
김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7	충남54바153*	1091894105485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39마621*	1091894109463
김 * 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26주176*	1091894109410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백암길	84수925*	1091894106496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29번길 20	충남83배104*	1091894109420
김 * 동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23	55가710*	1091894105370
김 * 민	충청남도 아산시 온궁로	20오118*	1091894108147
김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	03어843*	1091894109442
김 * 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저수지길	56모920*	1091894109483
김 * 미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243번길 13	충남42나763*	1091894105360
김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16	02우146*	1091894105372
김 * 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6	충남06도664*	1091894108262
김 * 빈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70	80마682*	1091894108253
김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45오434*	1091894105395
김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244번길 3-16	충남41가866*	1091894108167
김 * 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16누815*	1091894109447
남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111번길	06루609*	1091894109444
노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66부643*	1091894108250
노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30로420*	1091894105438
노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37로442*	1091894105445
노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42무905*	1091894105449
라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42다941*	1091894108151
민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14	56모361*	1091894106489
민 *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9	54가439*	1091894105369
박 * 속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221	40나887*	1091894108150
박 * 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450번길 3	94라588*	1091894108159
박 * 진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65번길 27-2	14마899*	1091894108216
박 * 정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6	19두574*	1091894108221
박 * 익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북길	27누995*	1091894105374
박 * 화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48	53무294*	1091894109478
박 * 성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56루579*	1091894109482
박 * 식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서로	53저373*	1091894105456
박 * 범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충남아산파262*	1091894105379
박 * 옥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103-17	15구440*	1091894106420
박 * 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28-3	16모891*	1091894106463
박 * 성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96번길 9	54마723*	1091894109426
박 * 현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북길	05너267*	1091894108207
박 * 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86라346*	1091894108255
박 * 일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충남34마623*	1091894108264
박 * 갑	충청남도 아산시 영치읍 송곡안길 32	34소925*	1091894106473
박 * 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13	89서224*	1091894106525
박 * 이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17	42무309*	1091894109468
박 * 호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36-3	80조211*	1091894108254
박 * 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11	70모411*	1091894108252
박 * 식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길	84어913*	1091894109492

배 * 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북로 22-6	충남43다421*	1091894108265
배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7-8	38어302*	1091894105447
배 * 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7-8	46서583*	1091894109473
백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25번길	07구220*	1091894105411
복 * 술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41번길 4-8	43거704*	1091894109469
서 * 웅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25번길	19수673*	1091894106438
서 * 인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7	14로326*	1091894108215
서 * 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261	52너940*	1091894109407
서 * 숙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7	94러139*	1091894109428
선 * 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59더697*	1091894108185
성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35번길	31수368*	1091894105332
손 * 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33조187*	1091894105341
송 * 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충남34너375*	1091894105482
송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31나371*	1091894109454
송 * 화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68번길	04더417*	1091894108206
신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31	34수215*	1091894105375
신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로47번길	14머269*	1091894105423
신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54	충남80아283*	1091894105487
신 * 섭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당정면로8번길 97-3	02두142*	1091894106444
심 * 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14마434*	1091894109446
안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88나143*	1091894108178
안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22로900*	1091894105432
안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33-30	31수347*	1091894109457
안 * 봉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24도702*	1091894109452
양 * 근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길120번길	04부266*	1091894108161
양 * 준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33번길 9	09모642*	1091894108193
염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충남80라149*	1091894105486
오 * 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19수363*	1091894109395
우 * 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02러729*	1091894109440
우 * 제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6노908*	1091894105468
우 * 정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삼성로 261	31로448*	1091894109455
유 * 임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81더290*	1091894105402
유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83	충남82다226*	1091894105353
유 * 경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51어502*	1091894106429
유 * 순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29다574*	1091894105437
유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7	충남아산파384*	1091894106505
유 * 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7	88도884*	1091894109493
윤 * 실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16번길	충남아산파715*	1091894108143
윤 * 정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13	40가269*	1091894108169
윤 * 수	충청남도 아산시 당정면 갈산길20번길	35버596*	1091894105443
윤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64구932*	1091894106509
이 * 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31부182*	1091894106469
이 * 모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52수935*	1091894105368
이 * 일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21	10러164*	1091894106437
이 * 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28-1	32우416*	1091894106432
이 * 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28-1	32우416*	1091894109458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09누778*	1091894105413
이 * 복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9번길 5-3	97나835*	1091894108140
이 * 성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44	충남80다961*	1091894106501
이 * 용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65번길 24-1	54주270*	1091894109427
이 * 윤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65버593*	1091894109486
이 * 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98	75버568*	1091894109489
이 * 호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31번길	충남아산파384*	1091894106504
이 * 라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17	46조369*	1091894109474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18주107*	1091894109419
이 * 돈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31부181*	1091894105362
이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17주137*	1091894108219
이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34누208*	1091894105440
이 * 아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192 -	49고241*	1091894105452

이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26번길	26거292*	1091894105434
이 * 남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3모981*	1091894108158
이 * 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3길 20	56주872*	1091894105354
이 * 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03-10	48구404*	1091894108170
이 * 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49번길 28	47서151*	1091894106520
이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충남81가589*	1091894109500
이 *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로111번길 3	19구801*	1091894105385
이 * 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23	83저375*	1091894109403
이 * 석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북로	63더752*	1091894105463
이 * 창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4거905*	1091894109397
이 * 하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길38번길	37수789*	1091894105342
이 * 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34구514*	1091894105439
이 * 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충남아산파680*	1091894106514
이 * 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54마278*	1091894106521
이 * 길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60러984*	1091894106492
이 * 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30마546*	1091894108195
이 * 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09누543*	1091894109392
이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41도469*	1091894109399
이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충남아산파419*	1091894109417
이 * 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7누464*	1091894106430
이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77-8	충남34더348*	1091894109404
임 * 택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97	84노390*	1091894105473
임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22	76도179*	1091894108155
임 * 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16	19어938*	1091894108146
장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862	66로525*	1091894105346
장 * 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충남83자681*	1091894105371
전 * 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신로230번길	47버176*	1091894105451
전 * 정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북길	충남31구126*	1091894106499
전 * 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01번길	50더991*	1091894105453
전 * 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51어338*	1091894109400
전 * 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길 212	59우697*	1091894106449
정 * 희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98	25서542*	1091894105338
정 * 호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14번길 26-8	06루393*	1091894106458
정 * 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6-15	14로371*	1091894105328
정 * 석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이화길	24오119*	1091894106529
정 * 식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충남34나416*	1091894108142
정 * 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11	72루171*	1091894105467
정 * 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58	34루929*	1091894109459
정 * 화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43번길 41	14모279*	1091894105384
정 * 화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43번길 41	41다442*	1091894105394
정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08더878*	1091894109445
정 * 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36	충남30너439*	1091894109499
정 * 경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65머198*	1091894106510
조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15노896*	1091894106445
조 * 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58	76어269*	1091894105366
조 * 숙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세교길248번길	충남아산파288*	1091894105491
조 * 룡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31번길 13	12마532*	1091894108172
조 * 릉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41	07도702*	1091894108209
조 * 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길	35러759*	1091894108231
조 * 국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53누239*	1091894109477
조 * 상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42누165*	1091894108235
주 * 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42루455*	1091894109467
지 * 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41도452*	1091894106426
진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94나832*	1091894109495
진 * 우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01-16	77누359*	1091894109402
최 * 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295번길	28주672*	1091894106425
최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05-17	94마645*	1091894106527
최 * 근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449번길	충남34더712*	1091894106443
최 * 선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4	55가208*	1091894106488

최 * 규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충남아산하730*	1091894108137
최 * 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길	충남82노463*	1091894108202
최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08더164*	1091894108211
최 * 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35너617*	1091894106474
최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57부416*	1091894105460
최 * 섭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65번길 15	충남70나659*	1091894108268
하 * 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대로	67너287*	1091894106452
한 * 훈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09모636*	1091894109393
한 * 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16-8	02저261*	1091894108181
한 * 수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420	충남아산파933*	1091894108144
한 * 준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34	97가342*	1091894108259
한 * 형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57-24	54라481*	1091894106485
한 * 철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83번길	15노877*	1091894105425
함 * 길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33번길	19나584*	1091894105428
허 * 행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60	66루931*	1091894105464
허 * 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01고775*	1091894109405
허 * 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385	43머467*	1091894109437
홍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흥산로610번길	42나856*	1091894106421
홍 * 영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흥산로610번길	89오963*	1091894106422
황 * 준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12	64서834*	1091894105349
황 * 하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6-45	59어938*	1091894108247
황 * 성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55가797*	1091894108184

아산시 공고 제2014-1428호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 월 14 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 이유

-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제 조건임
-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과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나. 부조리 신고관련 신고기한 · 방법 · 처리(안 제4조~제6조)
- 다. 신고자자의 보호(안 제7조)
- 라. 보상금 지급 심사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마.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안 제9조~제10조)
- 바. 부정부패 보상금 지급 기준(안 별표)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www.asan.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아산시청(감사담당관 열린감사팀)
 - 주소 : (우)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 전화 : (041)540-2317 팩스: (041)540-2017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나.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부. 끝.

붙임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 나)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과 아산시가 설립한 법인 및 아산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행위”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아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아산시민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의 감사부서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

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 행위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별표1에서 정한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① 시장은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제8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지 급 한 도 액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000만원 이내
조례 제2조제1호 나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또는 환수액의 100분의 10 이내 	1억원 이내
조례 제2조제1호 다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2,0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조례 제2조제1호 라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2,000만원 이내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소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아산시 공고 제2014-1429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쓰레기봉투·납부필증 공급·판매 업무 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납부필증의 공급·판매 업무를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아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36-701/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충남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41-540-2338, 팩스 041-540-20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업무담당자(전화 041-540-23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4호 서식부터 별지 10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판매)</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판매소에 대한 봉투·납부 필증의 공급·판매 업무를 <u>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에 4퍼센트 이하의 판매이윤을 줄 수 있으며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u><신설></u></p>	<p>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판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법인”이라 한다)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u>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u></p> <p><u><삭제></u></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p> <p><u>시장이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u></p>	<p><u><삭제></u></p>
<p>제27조(과태료 부과권자)</p> <p><u>과태료는 시장이 부과한다</u></p>	<p><u><삭제></u></p>
<p>제28조(과태료 부과예고 및 의견 청취)</p> <p>① <u>시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 니할 수 있다.</p> <p>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p> <p>①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입고지서와 함께 발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p> <p>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30조(이의제기 등)</p> <p>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의 건 진 술 요 청 서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환자)	생년월일	
	주 소			
위 반 사 항	위반일시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납부기한 금 액
과태료 처 분에 따른 의 건 진 술 기회의 부 여기간 및 장소	기 간			
	장 소			
위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 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진술요청인 (인 또는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삭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									
No. _____									
발행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입 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일금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 장 소				
위반사실	일 시	년	월	일	내 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 간		년 월 일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									
No. _____									
발행 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입 과목				
위반 행위 자	성명			주소					
과태 료금 액	일금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 사실	일시	년	월	일	내용				
위반 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년 월 일까지		
위반행위 자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아 산 시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일 금	원	당초납부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이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삭제>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단위 : 원				
고 지 금 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삭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납부기간		처분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일금 원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p> <p>아 산 시 장 귀하</p>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제 호			
주 소 :		발 신 : 아 산 시 장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p>1. 폐기물관리법 제68조와 관련됩니다.</p> <p>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일금 원
	부과기관		이의제기일자
<p>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p>			

아산시 공고 제2014-1431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환경과학공원 운영조례 중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자원처리장에 대해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

다. 생태곤충원에 대해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1조)

라. 타워시설에 대해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동 임대 등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

(우) 336-701/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1626번지)

(전화 041-540-2845, 팩스 041-540-20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기관”을 “시설물관리법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관리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기관”을 “시설물관리법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기관”을 “시설물관리법인”으로 한다.

① 시장은 생태곤충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타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②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해당 소각시설 시공 후 의무 운전하기로 약정된 자</p> <p>2. 1일 200톤 규모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수탁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p> <p>③ 생활자원처리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생활자원처리장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p>	<p>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④ -----시설물관리법인----- ----- ----- -----</p>
<p>제14조(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매점, 식당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p>	<p>제14조(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④ 시장은 <u>위탁기관</u>에 대하여 주민편익 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u>제15조(위탁기관의 선정) ①</u>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u>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u></p> <p><u>②</u>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p> <p><u>제17조(지원)</u>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다.</p> <p>제19조(생태곤충원 운영 등)</p> <p><u>①</u> 시장은 생태곤충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단지 내 수목의 관리를 함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u>②</u>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과 책임소재의 일원화를 위하여 생태곤충원 내부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u>시설물관리법인</u>----- ----- ----- -----</p> <p><삭제></p> <p><삭제></p> <p>제19조(생태곤충원 운영 등)</p> <p><u>①</u> 시장은 생태곤충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③ 생태곤충원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받은 일부 시설인 매점, 식당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생태곤충원 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생태곤충원 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다.</p> <p>제23조(타워시설의 운영 등)</p> <p>① 타워시설은 민간에게 임대할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분리 하거나 통합 또는 다른 시설과 통합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② 임대방법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용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결정한다.</p> <p>2. 입찰공고 1개월 전까지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재산 감정을 실시한다.</p> <p>3. 입찰 참가자 자격 및 조건은 입찰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4.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⑤ -----시설물관리법인----- ----- ----- -----</p> <p><삭제></p> <p>제23조(타워시설의 운영 등)</p> <p>① 시장은 타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24조(관리동 식당 관리 등) ① 관리동 내 식당은 민간에게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방법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결정한다. 2. 입찰공고 1개월 전까지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재산 감정을 실시한다. 3. 입찰 참가자 자격 및 조건은 입찰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p>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삭제></p> <p><삭제></p>

참 고 자 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설봉안당 관리·운영사업
2. 생활자원처리장(소각장) 관리·운영사업
3. 건강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
4. 생태곤충원 관리·운영사업
5. 종량제 봉투 및 배출스티커 판매사업
6.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산시 공고 제2014-1432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자원처리장, 주민편익시설, 생태곤충원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청구 및 수탁업무 결산서 제출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3

조제2항)

나.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

(우) 336-701/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1626번지)

(전화 041-540-2845, 팩스 041-540-203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규칙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위탁운영 비용) ①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의 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u>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제></p>
<p><u>제12조(주민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편의시설위탁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아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u></p>	<p><삭제></p>

[별지 제7호 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회체육지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공고 제2014-1435호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취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과 신고, 민간자원 연계 및 자립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행복키움추진단”은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복지문제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체계를 말한다.

제3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읍·면·동에 행복키움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4.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련 기관·단체 구성원 등

③ 추진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무)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2. 지역사회에 필요한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3.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결연, 후원, 자원봉사, 정기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지원
4.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홍보, 복지욕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 제안
5.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의무) ① 추진단은 임무를 수행할 때 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 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추진단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영) ① 추진단은 읍·면·동별 정관(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단에 대하여 추진단의 역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정보 교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추진단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